연구총서 00-14

•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 영 규

통 일 연 구 원

요 약

2000년 6월 13일~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남북간 인도주의적 교류 및 경제교류·협력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력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군사관계의 개선, 즉 군사적 대치상황의 완화가 요구되는 바, 그 주된 방법이 군비통제의 실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군비통제방안(한국의 군비통제정책 포함)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1. 한반도 군비통제방안의 선행연구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군비통제의 접근방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선 군축, 후 신뢰구축」 및 「신뢰구축과 군축의 동시 협상, 동시 시행」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유럽의 군비통제경험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적용하려는 연구,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제안 및 입장을 비교하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 그리고 워게임(war game)이나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 과학적 기법

을 이용하여 군비통제의 계량적 조건을 설정하려는 연구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와는 달리, 현재 쟁점이 되고 있거나 장차 논란이 예상되는 주한미군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한반도 비핵화 실현문제, 군축대상의 우선 순위문제 및 군축방법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진보적 시각 또는 보수적 시각에서 모색하려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유형별로 분류·검토하였는 바, 이는 방법론상의 분류에 여타 분류기준에 의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유럽 군비통제경험의 한반도 적용 유형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의 군비통제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효율적인 군비통제협상의 현실화는 상호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협조적인 대상자로의 전환 즉 상호간의 현실과 평화공존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는 바, 이는 양측간의 정치적인 관계개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축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없는 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관계개선은 군사면에서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불신이 심한 적대국간의 군축은 「정치관계 개선→군사적 신뢰구축→군축」의 점진적, 기능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은 이 유형을 참조하여 입안·추진되고 있다.

이 유형은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군비통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성상 및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상이한 개념 및 접근방법으로 인해 유럽에서의 군비통제 경험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이라기보다는 군비통제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남북한 군비통제방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유형

이 유형의 연구들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는 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연구의 접근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남북한이 제안한 군비통제방안과 양측간에 진행되어 온 협상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제시하는 한편, ② 한반도 군비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또는 남북한 군비통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③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한반도 군비통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이와 같이 공통된 접근방법으로 동일한 북한의 제안을 분석하고 있으나, 북한의 의도 및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 요인과 군비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는 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남북한의 입장에 대한 비교·분석, 특히 북한의 의도 및 제안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첫째, 탈냉전 이후의 국제 또는 지역안보상황,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변화, 한미안보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 주변환경 및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보수적 견해의 경우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을 주로 북한의 대남정책 및 의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제약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진보적 견해의 경우, 남북한간의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주로 한반도 군비통제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통제의 전반적인 접근틀 또는 대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해 절충식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여하고 있다.

다. 남북한 군비통제 모형 개발 유형

워게임(war game)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병력감축의 규모나 특정무기 감축시 감축의 상한선 설정, 군비통제의 계량적 조건 설정, 그리고 군비통제 협상모형 개발 등의 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예컨대 군비통제 협상모형은 정책결정모형, 교섭모형, 검증 및 효과분석 모형 등을 개발하여 협상대표가 모형을 통한 모의훈련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상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적극 활용한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군비통제 협상과정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시 참고자료나 정책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모형을 통한 반복적인 모의훈련, 각종 협상 결과의 예측, 각 이슈의 효과분석, 간접적 경험축적 등은 군비통제 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컴퓨터 모형의 제약으로 인하여

각종 변수와 요인 등을 정확히 모형화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군비통제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대국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의 기술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군비통제는 본질적으로 적대국간의 제반 정치·경제적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2.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여건 평가

가. 탈냉전 시대 국제 및 지역차원의 군비통제

탈냉전시대의 국제 및 지역차원의 군비통제 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자간 군비통제협상이 강화되고 있다. 냉전기간 중 미국과 구소련간 또는 동·서 진영간의 협상 등과는 달리 탈냉전시대의 국제 군비통제 활동은 다자간 협상의 형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CWC의 체결, NPT의 무기한 연장 합의, CCW의 제2 부속의정서(지뢰)의 개정안 타결, CTBT의 채택 등은 다자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들이다.

둘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군비통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CWC, CTBT, FMCT 등과 함께 CCW, 「유엔재래식 무기이전 등록제도」, '국제 무기이전', '재래식 무기 불법이전 및 사용', '소형무기', '과학·기술 발달 및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재래식 무기통제와 관련된 조치들은 유엔 및 제네바 군축회의를 중심으로 타결되었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추

진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셋째, 군비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냉전시대의 군비통제는 주로 전략 핵무기와 유럽지역에서의 재래식 무기 감축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는 핵무기는 물론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미사일 등 전반적인 대량살상무기가 군비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하여서도 CCW의 개정,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 채택, 「바세나르체제」 설립, 국제 무기이전과 재래식 무기 불법이전 및 사용에 대한 규제 및 통제조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군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탈냉전시대의 군비통제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유엔재래식 무기이전 등록제도」는 이의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다.

넷째, 검증방안 및 이행보장방안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WC에 검증의정서를 첨부하려는 노력, IAEA의 추가의정서('93+2 계획) 채택, CWC 이행의 검증과 사찰기능을 담당하는 OPCW의 설립, CCW에 검증방안 및 절차 추가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다섯째, 냉전시대의 미·소 초강대국과 유럽 중심 군비통제와는 달리,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는 국제차원과 병행하여 지역차원에서도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아·태지역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역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체제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지역에는 국가간의 영토분쟁을 비롯하여 인종, 종교, 자원,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ARF, CSCAP 및 NEACD를 중심으로 신뢰·안보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지역차원에서의 군비통제 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 정부차원의 안보대화 기구의 설립이 강구되고 있다.

나. 한반도차원의 군비통제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는 남북한간이 아니라 북·미간에 핵무기 및 미사일의 통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군비통제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남북한간에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간 군비통제에 대해 상이한 목표인식과 접근방법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간의 군사적 비대칭성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남북한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심각한 입장 대립이다. 다섯째, 한국 정부의 군비통제정책상의 문제로서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 및 지역차원 군비통제와의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

다. 동북아 안보환경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로 규정될 수 있는 현 동북아 질서는 아직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동북아지역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 분위기와 달리 아직까지 냉전적 요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대립구도'와 함께 경제협력 및 지역안정 유지 측면에서의 '협력구도'가 상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립구도는 냉전시대의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구조하의 대립구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구도로 볼 수 있는 바, 최근의 동북아 안보환경은 '대립속의 협력관계'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라.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및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상면·협의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둘째, 남북한이 상대방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셋째, 정상회담이 남북한 당국의 직접 접촉에 의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양측 정상간의 합의 사항을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상기와 같은 정상회담의 의미를 입증해 주고 있다. 예컨대 이산가족 상봉은 합의대로 추진되어 이미 2차례의 상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3차 상봉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또한 남쪽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조선국립교향악단과 KBS교향악단과의 협연, 시드니 올림픽 개회·폐회식 공동 입장 등의 이벤트성 행사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8월 14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및 경제협력실무회담 등 각종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가 합의·추진되고 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명록 특사의 방미(10월 9일~12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10월 23일~25일) 및 북·미 제6차 미사일회담 개최(11월 1일~3일, 콸라룸푸르) 등 일련의 북·미간 접촉으로

인해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 및 수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경우와 달리 남북정상회담이 아직까지는 북·일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진전은 향후 북·일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미·일 공조체제가 유지되는 상황하에서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은 북·일 양측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3. 한반도 군비통제 개선방향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여건 변화는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은 군비통제의 구체적·세부적인 이행방안 보다 상황적 여건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는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비통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안의 빈곤' 때문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빈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한반도 군비통제관련 선행연구 및 군비통제 추진여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의 군비통제 실현 의지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가. 정상회담의 모멘텀 유지·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군비통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요구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과제는 남북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과 함께 정치·군사분야의 긴장해소를 통해 상호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 틀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교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정상회담과 각종 당국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남북관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의한 제2차 정상회담 개최는 6.15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향후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넷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대북·통일정책을 위요한 이념적 갈등이 지속·심화될 경우 통일담론(또는 북한담론)의 활성화가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갈등이 합리적인 통일담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순조로운 대북정책 추진, 대북 협상력 제고 및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각급 남북회담에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반도문제의 특성상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페리 보고서」의 이행, 즉 「페리 프로세스」는 3국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 지양

지금까지의 남북한간 협상에만 의존하는 단선적인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정책을 지양하는 한편, 군비통제의 분야별 또는 주요 이슈별로 대화와 협상의 장을 선정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이 이들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간의 협상보다는 국제 군비통제의 기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의 통제를 구분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핵 및 미사일의 통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생·화학무기의 통제는 최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BWC와 CWC에서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는 남북한 차원, 4자 회담 차원, 지역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 ‘남북한·미국 3자 협상’ 추진

3자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시에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는 남북한과 미국이 동일한 지위에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3자 협상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자 협상은 북·미간 직접 군사협상이 핵 및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사문제 전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방어적 방위’ 개념의 도입

북한이 군비통제협상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방어적 방위’ 개념의 도입을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언적 차원에서 ‘방어적 방위’의 개념에 입각한 국방정책을 대내 외에 표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안보정책의 기본방향과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을 북한에게 보다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방어적 방위’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대화를 통해 동 개념에 대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남북한 양측은 ‘방어적 방위’ 개념의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군비통제협상시 감축대상무기의 선정 및 특정 군사력에 대한 지리적 배치를 제한하는 ‘배치제한지역’ 설정 등에 대한 합의 도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 차

Ⅰ. 서 론 ····· 1

Ⅱ. 군비통제 이론의 고찰 ····· 4
1. 국가안보와 군비통제 ····· 4
2. 군비통제의 개념 ····· 6
3. 군비통제의 기능 ····· 9

Ⅲ. 한반도 군비통제 선행연구 ····· 12
1. 선행연구의 유형 ····· 12
2. 유형별 접근방법 및 평가 ····· 13

Ⅳ.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여건 평가 ····· 34
1. 탈냉전 시대의 군비통제 동향 ····· 34
2. 동북아 안보환경 ····· 51
3. 남북한 정상회담 ····· 55
4. 종합평가 ····· 65

Ⅴ.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 67
1. 정상회담의 모멘텀 유지·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 69
2.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 지양 ····· 74
3. '남북한·미국 3자협상' 추진 ····· 79
4. '방어적 방위' 개념의 도입 ····· 83

Ⅵ. 결론 ····· 85

참고문헌 ····· 87

표 목 차

<표 1> 북미사일 북·미 절충 현황 ····· 62
<표 2> 민간 전문가들의 한반도 군비통제 제안현황 ····· 68
<표 3> 남북한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 75
<표 4> 통일·군사문제 추진 구도 ····· 76
<표 5> 한미 안보협력의 발전 구도 ····· 81

Ⅰ. 서 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 종식에 따라 국제사회는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군비통제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탈냉전의 추세 속에서 타결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I」(CFE I: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및 「전략무기감축조약」(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이어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는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의 무기한 연장 합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채택,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최종안 타결 등이 이루어져 세계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대량살상무기 및 비인도적 무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국제 군비통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차원에서의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설립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및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 다자 안보협력회의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1)]

그러나 남북한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세계적인 군비통제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국제적인 탈냉전 분위기의 영향으로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합의서」에 의해 남북간에 군비

1) 탈냉전 시대의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의 군비통제에 대해서는 제Ⅳ장 1절 "탈냉전 시대의 군비통제 동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임.

통제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92년 말 북한 핵문제와 이와 연계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문제로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됨에 따라 군비통제협상 역시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다행스럽게도 2000년 6월 13일~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교류나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군사관계의 개선, 즉 군사적 대치상황의 완화가 요구되는 바, 그 주된 방법이 군비통제의 실현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은 아직까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국방장관회담 자체가 군인사 상호방문교류의 일환이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또한 공동발표문의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며, "쌍방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내용 등도 상징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군사 직통전화 가설을 비롯한 초보적 단계의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곧 현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한 군비통제회담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군비통제문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한반도 군비통제방안(한국의 군비통제정책 포함)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분류·검토하여 이들 연구의 장·단점들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탈냉전 시대에 들어 활발히 논의·추진되고 있는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의 군비통제 동향, 한반도 군비통제의 현황,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여건을 분석·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군비통제 이론의 고찰

1. 국가안보와 군비통제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적대국보다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즉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로서 이를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하며, 핵무기,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군사력 증강을 통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성취하는 것으로서 적대국 또는 잠재적 적대국이 상호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군비를 통제하여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 정책은 '억지론'(deterrence theory)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억지론은 적대국에게 침략행동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그러한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신시킴으로써 침략행위를 단념시킨다는 논리이다. 이 경우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 결국 양자 모두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되나 안보는 보장되지 않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와 많은 국가 자원을 군비에 투입해 경제력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군비통제는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se)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2] 방어적 방위는 "공세는 불가능하지만 총체

2)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도발적 방위'(nonprovocative defense), '비침공적 방위'(nonaggresive defense), '비공세적 방위'(nonoffensive defense), '구조적 공격 불능'(structural inability to attack), '신뢰구축적 방위'(confiden-

적으로 신뢰성 있는 방어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바, "군사력의 위협적 공격역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면서도 실용성이 높은 방어적이고 비위협적인 방위태세를 갖추는 방안"이다[3]. 즉 방어적 방위는 방어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격역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래식 군사력을 재구성하여 군사대치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의도의 확실한 증거, 상호안보보장, 평시의 군사안정증진 방법이다.[4] 따라서 방어적 방위는 단순한 군비감축 방안이 아니라 군사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비감축과 군사력 구조개편의 단초를 마련하는 군비통제의 보완적 도구가 된다.[5]

탈냉전시대의 벽두에 즈음하여 「유럽재래식군비감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의 이른바 '신사고'(New Thinking)에 의한 양보에 연유한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의해 소련은 자국과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에 일방적으로 방어교리, '이성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을 적용하여 재래식 전력의 감축을 단행함으로써 「유럽재래식군비감축」의 타결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이성적 충분성'은 곧 '방위 충분성'(defensive sufficiency)을 의미하며, 이는 "방위에는 충분하나 공격에는 부적합한 수준의 전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6]

---

ce-building defense) 등은 '방어적 방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들임.

3) Anders Boserup and Robert Neild(eds.), *The Foundations of Defensive Defens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90), pp. 1~2.

4) Boserup and Neild, *The Foundations of Defensive Defense*, p. 1.

5) Philip Webber, *New Defense Strategies for the 1990s: From Confrontation to Coexistence* (London: Macmillan, 1990), p. 6.

6) Boserup and Neild, *The Foundations of Defensive Defense*, pp. 3~4.

2. 군비통제의 개념

군비감축(arms reduction)과 군비통제(arms control)는 학자 및 전문가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과 의미로 사용되거나 군비감축(군축)과 군비통제, 그리고 군축과 군비해제(disarmament)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들 용어의 개념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군비통제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축과 군비통제의 개념에 대해 이철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견해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있다.[7)]

첫째, 군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군축을 군비통제를 포함하는 총칭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구소련을 위시한 위성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이 견지해 온 입장이다. 특히 유엔은 군축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해 왔는바, 1978년 군축특별총회(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최종문서에서는 "군축을 일반 완전 핵군축(General and Complete Nuclear Disarmament)에서 정치군사 관계의 신뢰구축 조치(CBM: Confidence-Building Measure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구소련을 위시한 위성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은 서방국가들의 군비통제 용어 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군축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해 왔다. 이와 같이 군비통제를 군축의 하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David Singer와 Alva Mydal 등을 들 수 있다. Singer는 군비통제는 '군축 연속체'(disarmament continum)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것으로, 그리고 Mydal은 군축을 군비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를 위한 조치

7) 다음은 이철기, 「동북아 군축론: 신동북아질서의 모색」 (서울: 호암출판사, 1993), pp.42~50 을 참조하였음.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군비감축 및 군비철폐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첫째의 경우와는 반대로 군축을 군비통제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견해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군비통제 학파"(Arms Control School)들의 입장이다. 군비통제 학파를 대표하는 Thomas Shelling, Morton Halperin, David V. Edward, Jeffrey M. Elliot 및 Robert Reginald 등 그리고 스탠포드대학의 후버연구소는 군비통제를 잠재적대 국가간 모든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그리고 군축은 단지 군비의 실제적 감축 조치에만 적용되는 군비통제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비통제는 군비경쟁 안정을 통해 평시의 군비경쟁이 위기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써 군비균형을 기하려는 것과 어느 일방도 전쟁의 선제도발에 의해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여 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onald J. Puchala는 위기안정과 전쟁억지를 위해 군비감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증강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8)]

이러한 광의의 군비통제 개념은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후 대두된 「신뢰 및 안보구축조치」(CSBM: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개념을 반영하여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셋째, 군축과 군비통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서구

8) Donald J. Puchala, *International Politics Today* (New York: Dodd and Mead, 1971), p.288.

의 국제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다. Hans J. Morgenthau는 군축은 군비경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한 군비의 감축 및 철폐를 의미하는 반면, 군비통제는 군사적 안정조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군비의 규제와 관련된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David Ziegler 역시 군축을 군비의 감축 및 제거와 관련된 조치로, 군비통제는 군비의 습득·유지·사용을 규제하여 국가최고 결정권자의 통제하에 두어서 상호 억제력에 의한 평화를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상기의 군축과 군비통제에 대한 세 가지 견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예컨대 많은 학자들이 군축회담의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하고 있는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의 기간 동안에 개최된 「워싱톤 해군군축회담」은 군축의 개념을 강조하는 첫 번째 견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회담이 실패할 경우 보다 더 강한 해군력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는 미국이 해군군축을 주도했다는 환경적인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와 「유럽재래식군비감축」(CFE: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을 달성한 유럽의 경험은 군비통제의 개념을 강조하는 견해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호불신이 심한 협상 당사국들의 경우에는 기능주의적이며 점진적인 군비통제 접근방법이 포괄적이고 일시적인 군축 접근방법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9]

---

9) 유럽 군비통제의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영규, "동·서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 군비축소의 문제,"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 (서울: 법문사, 1989) 및 박영규,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참조 바람.

따라서 군축개념 또는 군비통제 개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시기, 지역, 위협성격 그리고 협상 당사자들의 상호불신 정도 등 현실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강조·적용되어야 한다.

상기의 논의 내용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군비통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정립하고자 한다.[10]

첫째, 군비통제는 어떻게 하면 전쟁 도발 유혹이나 오판 또는 전쟁 도발 기도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운용적 군비통제')과 어떻게 하면 전쟁 도발 능력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구조적 군비통제')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본 연구에서의 군비통제는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축, 군비해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둘째,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군사력의 현황과 부대이동, 기동훈련 등 군사활동을 상대방에게 노출·공개하고 확인케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서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셋째,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사력의 구조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군사력의 증강제한, 동결 및 감축 등의 조치를 통해 군사력의 균형을 축소 지향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여 안정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군비통제의 기능

군축과 군비통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에도 양 개념 모

10)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p. 104.

두 유사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상 큰 이견이 없는 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1]

첫째,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을 유지·제고함으로써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전쟁발발시 피해를 줄인다(damage limitation). 즉 군비통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전쟁은 군비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발한 전쟁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적을 것이다. 셋째, 방위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이익(cost containment)을 가져온다.

이러한 군비통제의 기능 또는 필요성은 이론적으로 거의 절대적인 당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이고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들 기능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해 회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양을 제한하더라도 낡은 무기를 성능이 우수한 무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제고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피해정도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고도의 첨단기술무기의 개발·도입으로 인해 방위비가 오히려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군비통제의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와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여 상호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협조적인 적대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군비통제는 기습이나 전면

11) Michael D. IntriLigator and Dagobert L. Brito, "On Arms Control," Edward A. Kolodziej and Patrick M. Morgan(eds), *Security and Arms Control, Vol. 1: A Guide to National Policy Making* (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p.216.

공세를 어렵게 하고, 현재나 미래 군사력의 균형유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여 주며, 협약위반에 대한 정치적 손실을 증대시킴으로써 군사력 이용의 국제적인 규범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관계개선은 환류되어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게될 것이다.

Ⅲ. 한반도 군비통제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유형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군비통제의 접근방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선 군축, 후 신뢰구축」 및 「신뢰구축과 군축의 동시 협상, 동시 시행」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유럽의 군비통제경험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적용하려는 연구,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제안 및 입장을 비교하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 그리고 워게임(war game)이나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군비통제의 계량적 조건을 설정하려는 연구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12] 이러한 분류와는 달리, 현재 쟁점이 되고 있거나 장차 논란이 예상되는 주한미군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한반도 비핵화 실현문제, 군축대상의 우선순위문제 및 군축방법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진보적 시각 또는 보수적 시각에서 모색하려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한 군비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남북한 대량살상무기 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통합방안, 한미 무기이전 통제, 지역군비통제 논의, 국제군비통제 논의 등의 주제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13]

---

12) 박종철,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6~8.

13) 황진환, "한국의 군비통제 연구: 정향과 과제,"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26, 1999. 12, pp. 155~178.

다음에서는 방법론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유형별로 분류·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방법론상의 분류에 여타 분류기준에 의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유형별 접근방법 및 평가[14]

가. 유럽 군비통제경험의 한반도 적용 유형

(1) 접근방법 및 방안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의 군비통제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적용하려는 연구들[15]로서 우선 그 과정 및 교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16]

---

14) 본 절의 내용은 특정인의 연구 결과 보다는 유형화 및 전반적인 유형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연구가 단순화(over-simplify)된 경우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둠.

15) 외교안보연구원, 「남북한군축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영규, "동·서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 군비축소의 문제,"; 박홍규, "유럽의 신뢰성구축방안과 이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외교안보연구원 논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6); 조충현, "한반도 군비통제 향방에 관한 제안," 북한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1992. 6. 2, 발표 논문;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pp. 103~112; Jonathan Dea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How is the European Experience Applicabl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 no. 1 (Summer 1991); James E. Goodby,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1 (Summer 1990); Robert E. Hunter, "Lessons for Korea from Conventional Arms Control Talks in Europ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1 (Summer 1990) 등

16) 다음은 박영규, "동·서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 군비축소의 문제" 논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960년대 말부터 동서진영은 각각 유럽에서의 재래무기 감축회담을 제의하기 시작하였는 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상호균형감군회담」(MBFR: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을, WTO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제의하였다. 이들 회담은 1973년에 공식적으로 시작, 유럽에서의 재래무기 감축협상은 이들 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MBFR은 미·소 「전략무기제한조약」(SALT Ⅰ)협정이 체결되고 서독과 소련을 필두로 한 동서유럽간 각종 화해조약의 체결로 데탕트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서화해시대의 상징으로 각광을 받으며 NATO회원국(프랑스 제외)과 WTO동맹국간의 중부유럽 7개국(베네룩스 3국, 동·서독, 체코 및 폴란드)에서의 상호 감군을 목적으로 1973년 10월 비엔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MBFR회담은 벽두부터 NATO군과 WTO군 병력산정, 감축무기의 대상 및 처리 방법, 검증문제 등에 관한 양측의 심각한 견해차이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특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거리 핵전력(INF: Intermediate Nuclear Forces)문제의 심화, 폴란드의 계엄령 발동 등 잇따른 사건들이 발생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MBFR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기대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유럽국가 및 미국·캐나다 등 35개국(NATO 16개국, WTO 7개국, 비동맹 및 중립국 12개국)이 참가한 CSCE는 1975년 8월 1일 신뢰구축방안(CBM)을 포함한 유럽에서의 긴장완화를 규정한 「헬싱키 최종 합의서」(Helsinki Final Act)의 채택을 계기로 제2차 냉전시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980년 11월~1983년 9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CSCE검토회의에서는 「헬싱키 최종 합의서」의 이행 노력재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다. 同문서에 의거,

1984년 1월 17일~1986년 9월 22일 간 총 12회기에 걸쳐 스톡홀름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유럽군축회의」(CD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Europe)는 「신뢰 및 안보구축 방안」(CSBM)을 규정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Document)을 체결함으로써 종료되었는 바, 同협약은 1986년 11월 4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차 CSCE검토회의에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NATO측은 MBFR을 대체하는 새로운 재래무기감축 forum을 창설하자는 WTO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1987년 2월부터 전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재래식 무기감축협상을 위한 양측간의 예비회담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1989년 3월 6일 CSCE의 35개국 외무장관들은 비엔나에서 NATO와 WTO 가맹국 23개국이 참여하는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상」(CFE)을 발족시켰다. 이후의 협상에서 동서 양측은 감축대상무기의 구체적 정의, 상한선 설정, 지역분할, 검증, 병력감축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1990년 11월 19일 「CFE Ⅰ」(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Ⅰ)을, 그리고 1992년 6월 29일 「CFE Ⅰa」를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스톡홀름 협약」을 보완하여 CSBM을 대폭적으로 확대·개편한 「비엔나 협약」(Vienna Document)이 2단계를 거쳐 체결되었다. 1989년 3월 9일 시작된 제1단계 「비엔나 협약」은 당시 34개국이 서명하여 1991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후 보다 완벽한 CSBM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어 1992년 5월 1일 48개국이 가입한 제2단계 「비엔나 협약」이 발효되었다. 「비엔나 협약」에는 「스톡홀름 협약」과 달리 ①군사정보의 연례교환, ②위험감소, ③접촉, ④의사소통, ⑤연례 이행검토회의 등 5개의 새로운 章과 교환된 자료에 대한 평가항목이 준수검증의 일부분으로 새로이 첨가되었다.[17]

이와 같은 유럽에서의 재래무기 감축협상 진전과정은 아래에서 논

의되는 바와 같이 평화정착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군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로, 동서 양진영은 「헬싱키 최종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유럽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75년에 채택된 「헬싱키 최종 합의서」는 주권존중, 국경선의 불가침성 및 내정불간섭 등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10대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의 33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성된 국제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고 유럽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단계로, 「스톡홀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인 군사적 안전과 신뢰구축 조치를 마련하였다.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주요내용의 실천을 의무화한 「스톡홀름 협약」은 기습공격의 위험이나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종 군사활동을 노출시키고 확인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재래무기 감축협상에 필요한 유익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18]

① 13,000명 이상의 병력과 300대 이상의 전차가 참여하는 지상 훈련의 42일 이전 통지

② 17,000명 이상 규모의 지상훈련에 타회원국 참가단 초청

③ 미통지 지상훈련 혐의국가에 대한 현장검증을 포함한 지상 및 공

---

17) 「비엔나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사사점과 관련하여」, pp. 73~85 참조 바람.

18) 「스톡홀른 협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람. Richard E. Darilek, "The Futur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A Tale of Two Cities: Stockholm, Vienna," *Survival*, Jan/Feb. 1987; "The First Attempts: MBFR and CSCE," *Headline Series 287*; Y. Ben-Harin, et.al.,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Europe: The Potential Role of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RAND R-3431-USDP), 1986; John Borawski, "From Stockholm to Vienna: Confidence-and-Security-Building Measures in Europe," *Arms Control Today,* May 1989.

중 감시

④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차기 년도 유럽내 군사훈련 실시계획의 상호교환

⑤ 75,000명 이상(2년 전) 및 40,000명 이상(1년 전) 군사훈련의 사전 통지

⑥ 무력사용의 위협을 삼간다는 공약의 재확인

마지막 단계로, 구체적인 군축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CFE Ⅰa」가 체결되었는 바, 이에는 ①감축대상 무기의 선정 및 정의, ②감축대상 상한선 설정, ③감축방법, ④정보교환, ⑤검증, ⑥병력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9] 이와 같이 구체적인 군축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상기의 신뢰구축 과정과 함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따른 소련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 측의 입장 변화, 즉 최초의 군사력 현황공개, 검증수단으로서의 현장검증(on-site inspection) 원칙승인, 동서 재래식 군사력의 불균형에 대한 인정, 「방어적 독트린」과 「합리적 충분성」의 채택, 일방적 철수 선언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유럽의 재래무기 감축협상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군축협상의 현실화는 상호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협조적인 대상자로의 전환 즉 상호간의 현실과 평화공존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는 바, 이는 양측간의 정치적인 관계개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축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없는 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관계개선은 군사면에서의 관계개

19) 「CFE Ⅰ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평가에 대해서는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사사점과 관련하여」, pp. 99~114 참조 바람.

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불신이 심한 적대국간의 군축은 「정치관계 개선→군사적 신뢰구축→군축」의 점진적, 기능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은 이러한 유럽의 재래무기 감축협상의 사례를 참조하여 입안되었는 바, 이는 「국방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다. 즉 「국방백서」는 "우리의 군비통제정책 목표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발발 위험을 감소시키고, 상호 군사력의 운용을 조정 및 통제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남북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20] 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목표 하에 군비통제의 추진단계 및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21]

<제1단계: 신뢰구축 단계>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상호 군사적 투명성 향상, 불가침 보장체제 확립을 통해 군비제한 및 축소의 여건조성
○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에 포함된 방안 시행
- 남북군사 당국자간 군사직통전화 설치
- 군사공동위원회 및 핵통제공동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동위기관리체제 구축
- 정전협정 준수 등의 조치로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 및 평화적 이용 보장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극지원
-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및 참관

20)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국방부: 1996), p. 129.
2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pp. 132~133.

- 대량파괴무기 및 공격무기 등에 관한 군사정보 교환
- 군 인사교류

<제2단계: 군비제한 단계>

○ 무한군비경쟁의 중단을 통한 군축기반조성 및 대량파괴무기 및 공격용 무기통제를 통한 기습능력 제한, 특정지역에 대한 상호 군사력 운용 통제를 통한 군사적 안정성 증대
○ 군비경쟁의 낭비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 화생무기 및 장거리 유도무기의 통제 및 공격용 무기의 제한 조치 등을 통한 대량파괴 및 기습공격능력 제한
-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 제한
- 수도권 안전보장 조치 추진

<제3단계: 군비축소 단계>

○ 상호 군비감축을 통한 적정수준의 균형 달성 및 군사력 배치 조정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체제 정착
○ 남북한 상호합의하에 감축대상무기 및 보유수준을 상호 동수 보유 원칙에 따라 결정, 점진적 감축 추진
- 병력: 상호동수보유 원칙하에 상비병력과 동원병력 병행감축
- 장비: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추진
- 전방 배치병력의 우선적 감축
- 공격용 무기의 배치제한구역 설정을 통해 제한구역내 군사력 배치 및 운용 통제추진

이외에도 유럽 군비통제경험의 한반도 적용 유형에 속하는 연구들은 상기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군비통제정책과 구체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군비통제 접근방법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역시 「군사적 신뢰구축→군축」의 단계를 설정하고,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22]

<'3단계 통일론'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상호 군사 정보의 교환과 통신 유지
  - 군사력 보유 현황, 특정 규모 이상 부대의 배치, 장비 및 땅굴을 포함한 작전 시설, 국방비 내역과 방위 산업 현황 등의 군사 정보 교환
  - 군 인사 교류
  - 군 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운영
○ 주요 군사 활동 공개
  - 부대 이동이나 기동 훈련의 사전 통고 및 참관 초청 의무화
○ 기습 공격이나 우발적 무력 충돌의 방지
  - 비무장지대에서의 병력·장비를 철수하여 실질적 비무장화를 통한 평화지대 형성
  - 비무장지대에 문화·체육, 이산가족 면회, 물자 교류 시설의 건설
  - 동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호 감시와 사회간접자본의 시설로 활용
  - 비무장지대 후방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제한 배치 지역(LDZ)을

22)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pp. 108~110.

설정하여 이 지역에 공세 전력의 배치 금지를 통해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보 능력의 향상 도모

- 한반도 비핵화 실현

<'3단계 통일론'의 군축 방안>

○ 동수 보유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적정 규모의 균형된 군사력 유지
○ 군사력 수준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고, 통일국가의 위상과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결정
○ 대량 살상 무기 최우선 폐기, 그리고 기습 공격과 공세 작전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차, 장갑차, 야포(자주포), 공격용 헬기, 전투기 등과 같은 공격용 무기부터 감축

한편 군비통제의 접근단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연구들도 있다. 하영선 교수는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라는 개념은 그 목적이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인 반면,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라는 개념은 그 목적이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군사력 형세를 안정시키고 상호 투명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정의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를 규제와 신뢰구축 방안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23]

23) 하영선,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군비통제방안,"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p. 166.

(2) 평가

우선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의 군비통제사례가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유럽에서의 특정 신뢰구축방안이 특정 지역에 적용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신뢰구축과정 자체가 상당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적절히 응용될 수 있는 것이다.[24] 그러나 한반도에는 유럽의 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구조의 결여, 복잡한 양자간 동맹관계, 남북간 첨예한 군사적 대립, 상호실체의 불인정, 심각한 상호 불신, 상호 군사력 평가에 대한 합의 결여, 군비통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유럽의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25]

이러한 맥락에서 Adam Rotfeld는 유럽에서 군비통제가 추진되어 온 과정은 지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시간에 전개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나타난 반응(reactio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6]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첫째, 유럽의 군비통제는 수학적 모델과 같이 하나의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논리적인 의사결정절차와 행위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24) Cathleen S. Fisher and Jefferson B. Seabright, *Divided States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e German and Korean Experiences* (Washington, D.C.: The Henry L. Stimson Center, 1992), p. 11.

25) 박종철,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p. 7.

26) Adam Rotfeld, "Applicability of European arms control model to the Korean Peninsula,"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0), p. 71.

어려우며, 둘째, 유럽에서 군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도로 정교한 군사적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소련과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 및 각국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7]

요컨대 유럽에서의 군비통제 경험은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이라기보다는 군비통제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로, 유럽 군비통제경험의 한반도 적용 유형은 군비통제가 근본적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문제라는 현실적인 고려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유형이 제시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상호 불신을 제거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호 안보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실행이 용이한 사항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군사적 안정을 확보한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군비통제에 대해 상이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예컨대 남한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과 북한의 「선 군축, 후 신뢰」의 접근방법이 대립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방안 자체의 합리성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한반도 군비통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도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로,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교훈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의 방어적 방

27) Adam Rotfeld, "Applicability of European arms control model to the Korean Peninsula," pp. 57~58.

위 원칙의 채택은 유럽재래식군사력 감축협상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공히 아직까지도 '억지론'(deterrence theory)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28] 즉 한국의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은 북한의 공격 전력 감축을 통해 한국의 억지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해 한국의 억지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억지론에 입각한 구조적 군비통제 방안은 군사력의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양측의 억지력 증가를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군비증강의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억지이론의 적용이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방지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군비증강으로 야기된 군사적 불안정의 조성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군비통제의 현실화는 방어적 방위에 기반한 군비통제 방안이 마련될 때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각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격용 군사력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남한의 주한미군을 동시에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추진되어야 한다.

나. 남북한 군비통제방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유형

(1) 접근방법 및 방안

이 유형의 연구들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군비통제에 대한

28) 하영선,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군비통제방안," p. 169.

남북한의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는 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9]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들 연구의 접근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바, ① 남북한이 제안한 군비통제방안과 양측간에 진행되어 온 협상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제시하는 한편, ② 한반도 군비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또는 남북한 군비통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③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한반도 군비통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이와 같이 공통된 접근방법으로 동일한 북한의 제안을 분석하고 있으나, 북한의 의도 및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군비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들 견해를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로 대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보수적 견해>[30]

---

29) 이달곤,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1권 1호 (국토통일원, 1989 봄); 박홍규,「남북한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차영구, 「남북한군축협상 추진방안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함택영 외, 「남북한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서울: 예진출판, 1990);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청계연구소, 1991);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서울:법문사, 1990); 송대성, "한반도군축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 및 제약성,"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안병준, "남북한 군축의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양성철, 조덕현, "남북한 군비통제 제안분석 및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1호 (한국정치학회, 1987); 유재갑, "남북한 군비통제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4호 (한국정치학회, 1995); 유재익, "남북 군비통제의 과거·현재·미래,"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2 (1997. 12) 등.

30) 다음의 논의는 유인택, "북한의 정치 군사회담의 배경," 한국국방연구원, 「남북한 정치 군사회담과 대응책」 국방학술토론회, 1989, 5월 11일; 유재갑, "남북한 군비통제의 문제점과 가능성," 「남북한 관계개선과 군비통제」 한국발전연구원 학술심포지움, 1990년 10월 25일; 오관치 외, 「남북한 군비통제

첫째, 주한미군 철수 및 10만 이하 병력수준까지의 감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북한의 제의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① 한국내의 정치 사회적 갈등요소를 최대한 확대시켜 통치위기를 조성하려는 기도이다.

② 대내적으로는 통일문제와 남북한문제 등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선전함으로써 권력핵심의 지도력 강화와 사회긴장 분위기 조성 및 유지에 활용하겠다는 의도이다.

③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여론에 영합하여 평화적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을 모면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고 한다.

④ 한·미간의 이간을 획책하고 남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회피하면서도 그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다.

둘째, 상기와 같은 북한의 제의에 대한 의도 분석의 논리적인 귀결로 지금까지 한반도 군비통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략적이고 비타협적인 대남정책 및 군비통제정책 때문인 바, 북한의 기본 대남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남북간 군비통제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 군비통제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함께 상호간에 안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는 상호간의 신뢰조성과 위기감소 조치의 선행으로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전략에 관한 연구(Ⅱ)」(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12); 유석렬, "남북한 군비통제의 배경, 특징, 전략," 신정현 외,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서울: 예진출판사, 1993); 남만권, "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국방연구원, 「군축환경 및 북한핵」(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4); 유재갑, "남북한 군비통제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유재익, "남북 군비통제의 과거·현재·미래" 등 참조.

남한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음과 같은 '군사적 비대칭성'을 북한이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심리적 비대칭성: 남한이 6.25 침공을 당했다는 역사적으로 고착된 불안감이다.

② 지리적 비대칭성: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150km이지만 서울까지는 50km밖에 안되며, 지형도 휴전선 남쪽은 갑자기 협소해져 북측의 공격군이 전력을 집중하기 용이하다.

③ 군사교리와 무기 및 배치상의 비대칭성: 북한은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 공세기동과 기습교리를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주로 기동위주의 전력을 건설하고 65%이상의 전투력을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고 있다.

④ 체제상의 비대칭성: 북한은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군사 표적이 숨겨져 있지만 남한은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정보와 표적이 노출되어 있어 항상 상대방의 협박에 의한 취약함을 면키 어렵다.

넷째,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방안으로는 유럽 군비통제경험의 한반도 적용 유형과 유사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유재갑은 「예비적 신뢰구축 조치→신뢰구축 조치→위기감소 조치→군비감축 조치→군축후 신뢰유지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1]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쌍방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부분적인 감축 또는 군사력의 일부 재배치 문제까지 신뢰구축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논의는 동시에 할 것과 나아가서 군비통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구축과 군축을 선후의 문제 혹은 이원적

31) 유재갑, "남북한 군비통제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p. 505.

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적 견해>[32]

첫째, 북한의 군축 제안 및 정책이 이면의 다른 목적을 지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북한 제의의 의도 분석보다는 북한 군축정책의 특징 분석 또는 목표 추론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① 군축문제를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② 군축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바, 이는 군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군사전략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근본적으로는 북한에는 군비통제론의 개념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며, ③ 남한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 적극적·공격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군축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① 남한에 대한 '군사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②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③ 현재 직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한다. ④ 대내외적 평화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다.

둘째, 한국의 군비통제 정책 및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① 미국식 "군비통제론"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군축대신 냉전적 사고에 기반을 둔 군비통제를 우선시하는 '비관적 현실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②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끌고 대북 압력

32) 다음은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3~42; 이철기, 「동북아 군축론: 신동북아질서의 모색」; 이철기,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한국정치학회, 1995), pp. 511~541;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백영철 편,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pp. 138~158 등을 참조하였음.

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고 있다. ③ 주한미군이 있어야만 한국안보가 가능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곧 공산화된다는 사고로 인해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④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제안은 모두 위장평화공세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⑤ 군축은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고착시켜 한국의 안보를 저해한다는 인식 때문에 군축에 대해 소극적이고 기피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군비통제 및 군축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방어적 방위'의 한반도 적용을 주장하는 한편, 군비통제 및 군축의 원칙으로는 '안정성의 원칙,' '호혜성의 원칙,' '통일지향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축 실현을 위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거나 또는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충식 해결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① 주한미군문제: '미군이 없는 한국안보,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정책적인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유연하고 자주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33]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우선 주한미군문제는 북한이 군축제안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남북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보다 신축적인 입장, 즉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 한미군의 장래는 한국의 의사가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과 묵시

33) 이철기,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p. 526.

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② 군비통제 접근방식의 문제: 한국이 단계적·점진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실질적인 군축을 강조하는 동시적·포괄적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타협점은 "동시 협상, 동시 시행"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뢰구축은 군축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신뢰구축의 실행이 반드시 군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과 남북한간의 뿌리깊은 불신과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는 군축만큼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등의 이유로 한국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접근방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감축대상의 우선순위문제: 남북한간 또 하나의 쟁점사항인 감축대상의 우선순위문제, 즉 「한국의 무기감축 우선, 북한의 병력감축 우선」의 해결방안으로는 한반도 군비통제에 있어서 병력감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기와 병력 감축을 같은 협상틀 내에서 동시에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병력감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지나치게 과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병력감축은 군사비 절감의 지름길이라는 점, 그리고 병력감축 없이는 질 위주의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구조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④ 감축방법의 문제[34]: 다음과 같은 절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남북한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동수보유원칙」에 의거해 대상무기와 병력에 대한 동일상한선(equal ceiling)을 설정한다. 동일상한선

34) 한국은 「상호동수보유원칙」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과다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여 상호동등수준을 달성한 후,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군축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병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남북한 각기 10만명의 병력을 동수보유하여, 이에 상응하는 무기를 감축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의 수준은 적게 보유한 측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대상의 유형에 따라 상한선을 달리한다. 합의된 상한선에 이르기까지의 감축방식은 남북한간의 기존 보유수 차이를 인정하여 「단계별 동율감축」방식을 적용한다.[35]

(2) 평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유형의 연구들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군비통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는 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남북한의 입장에 대한 비교·분석, 특히 북한의 의도 및 제안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첫째, 탈냉전 이후의 국제 또는 지역안보상황,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변화, 한미안보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 주변환경 및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36]

둘째, 보수적 견해의 경우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을 주로 북한의 대남정책 및 의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제약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37]

① 남북한간의 뿌리깊은 상호불신이 한반도 군비통제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35) 이철기,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pp. 534~535.

36) 환경 및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Ⅳ장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여건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임.

37) 박영규,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 pp. 147~151.

② 군비통제의 역할에 대한 남북한의 상반된 견해, 즉 남한의 「선평화, 후통일」정책과 북한의 「선통일, 후평화」정책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남북한 공히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를 진정한 군비통제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닌 대내외 선전용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점이다.

④ 남북한간의 군사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군비통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⑤ 동맹국들의 대남북한 군사력 증강지원이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진보적 견해의 경우, 남북한간의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주로 한반도 군비통제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통제의 전반적인 접근틀 또는 대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해 절충식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결여하고 있다.

다. 남북한 군비통제 모형 개발 유형[38]

(1) 접근방법 및 방안

워게임(war game)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병력감축의 규모나 특정무기 감축시 감축의 상한선 설정, 군비통제의 계량적 조건 설정, 그리고 군비통제 협상모형 개발 등의 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39] 예컨대 군비통제 협상모형은

38) 「남북한 군비통제협상 적용모형 연구」(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2); 「남북한 군비통제 모형개발 II」(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Yong-Sup Han, *Designing and Evaluat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Measures: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Santa Monica, RAND, 1992) 등

정책결정모형, 교섭모형, 검증 및 효과분석 모형 등을 개발하여 협상대표가 모형을 통한 모의훈련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상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적극 활용한다.[40]

(2) 평가

이 유형의 연구들은 군비통제 협상과정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시 참고자료나 정책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모형을 통한 반복적인 모의훈련, 각종 협상 결과의 예측, 각 이슈의 효과분석, 간접적 경험축적 등은 군비통제 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컴퓨터 모형의 제약으로 인하여 각종 변수와 요인 등을 정확히 모형화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군비통제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대국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의 기술적인 수단[41]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하겠다. 군비통제는 본질적으로 적대국간의 제반 정치·경제적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

39) 이들 연구가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 기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함.
40) 「남북한 군비통제 모형개발 Ⅱ」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41) Hedley Bull, *The Control of the Arms Rac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1), p. 11.

Ⅳ.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여건 평가

1. 탈냉전 시대의 군비통제 동향

가. 국제 및 지역 차원

(1) 개요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절대안보의 개념에 입각한 자국의 안전보장 보다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국의 군사적 능력에 의존한 국가안보의 한계, 즉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적대국 혹은 잠재적국과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 기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협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군비통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통제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군비통제가 활발하게 논의·추진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42]

우선 핵무기와 관련하여서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제군비통제의 성과로 인정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42) 다음의 내용은 주로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이재헌, "국제 및 주변국의 군비통제 추이: 남북 군비통제 정책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1(1997. 7), pp. 91~142, 최강, "국제 군비통제 방향 및 대응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9 제Ⅵ권 제2호를 참조하였음.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의 무기한 연장을 들 수 있다. NPT조약은 1970년에 발효되었으며 25년이 시한이었으나, 그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을 위요한 비핵국들과 핵보유국들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인하여 NPT조약의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조약시한 마지막 연도인 1995년 5월 12일 NPT체제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핵비확산에 대한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1996년 10월 유엔총회는 지하, 수중, 대지, 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까지도 포함한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CTBT를 채택함으로써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7년 3월 이후 CTBT 서명국들(1999년 3월 현재 152개국)은 사찰, 교육, 감시체계 운용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rganization)의 창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7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는 기존의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한 추가의정서('93+2 계획)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는 정부간 협약에 의거하여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등 군사적 용도의 핵분열물질의 생산까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동 조약이 타결될 경우, 이는 IAEA, NPT 및 CTBT 등과 함께 핵확산 금지체제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확산 금지체제의 강화와 함께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획득, 비축, 보유, 이전 및 사용의 금지와 폐기를 목표로 1969년에 협상을 시작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최종안이 23년의 협상과정을 거쳐 1992년 8월에 타결되고, 1997년 4월 29일 발효되었다. CWC는 1999년 6월 현재 169개국이 참여하는 범세계적인 협약이다. 뿐만 아니라 CWC의 발효와 동시에 CWC 이행의 검증 및 협의를 위하여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가 발족되었는 바, 특히 OPCW는 기술사무국내에 검증부를 설치하여 검증과 사찰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생물무기는 1975년에 발효되어 남북한을 비롯하여 1999년 3월 현재 14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BWC는 검증의정서를 결여하고 있어 협약 이행의 위반을 감시·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어연구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시 공격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행정 및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사무국)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가 1991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회원국간, 특히 서방측과 비동맹측간의 구체적인 검증조치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정부전문가회의」(VEREX: Verification Experts Group)와 「특별그룹」(ad hoc group)회의 등을 개최하여 검증체제의 구축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제5차 평가회의가 개최되는 2001년까지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WC의 실효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핵·화학·생물무기의 통제와 함께 미사일 기술의 확산과 이에 대한 통제가 대량살상무기 통제의 일환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는 미사일이 핵을 비롯한 화학·생물무기의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미사일 관련부품 및 기술, 정보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설립하여 현재 3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MTCR의 적용을 받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 특히 확산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국가들이 MTCR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MTCR은 정부간 조약에 근거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초반부터 MTCR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바, 향후 MTCR 가입 및 강화 압력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군비통제 활동은 재래식 무기의 통제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3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1996년 5월 합의된 「비인도적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의 개정과 1997년 12월 서명이 시작된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을 들 수 있다. 무차별적 살상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의 제한·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CCW는 본문과 4개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6월 현재 73개국이 가입해 있다.[43] 1996년 5월에 개정된 주요 내용(제2 부속의정서 개정안)은 탐지불능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CCW 제2 부속의정서의 개정만으로는 지뢰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다

---

43) CCW의 4개 부속의정서:
- ·제1의정서: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
- ·제2의정서: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금지
- ·제3의정서: 화열무기 사용금지
- ·제4의정서: 레이저 실명무기 사용금지

는 판단 하에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위한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44]을 채택하였다. 동조약은 1997년 12월 3~4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123개국이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실현을 보게 되어 1999년 3월 발효되었으며,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와 대인지뢰의 궁극적인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133개 국가·지역이 서명을 마쳤으며, 이중 99개 국가·지역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비준국은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4년 이내에 보유한 대인지뢰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유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매설된 지뢰는 10년 이내 제거하고, 6개월 이내 회원국들은 자국의 대인지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CCW와 함께 1996년 11월 창설된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도 재래식 무기의 통제에 기여하고 있다. 1999년 3월 현재 3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의 17개 회원국들이 냉전이후 지역분쟁 유발국으로의 전략물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COCOM을 해체하고 러시아, 동구 등 공산권을 포함하여 창설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이다.[45] 즉 동 체제는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등 「유엔재래식 무기이전 등록제도」(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의 7가지 재래식 무기와 정밀 공작기계, 슈퍼컴퓨터 등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분쟁유발

44) 「오타와조약」이라고도 하며 원명은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으로서 총 2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45) 「바세나르체제」의 성립과정, 조약분석 및 이행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성훈, "COCOM, Wassenaar 체제 그리고 한국의 안보,"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7(2000. 6), pp. 135~156 참조바람.

국과 정세위험국으로의 이전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바세나르체제」는 각 회원국이 통제품목을 선정하고, 수출허용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즉 국가재량원칙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통제의 효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을 통해 재래식 무기통제와 관련된 조치들이 적극 논의·추진되고 있는 바, 주요 현안으로는 '국제 무기이전', '재래식 무기 불법이전 및 사용', '소형무기' 규제 등이 있다. 특히 국제 무기이전과 관련하여서는 1993년부터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엔재래식 무기이전 등록제도」가 발족하여, 7가지 공격형 무기의 이전을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투명성 증대의 일환으로 「유엔 군사비 표준양식」을 이용한 각국의 군사비 보고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국제차원 군비통제활동의 활성화 추세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태지역에는 아직까지 군비통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차원의 기구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와 병행하여 비록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지만 군비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뢰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로서는 우선 정부간 공식 협력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들 수 있다. 1994년 7월에 설립되어 현재 남북한을 포함하여 23개국(ASEAN 10개국 및 ASEAN외 참가국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ARF는 ①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② 탐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③ 신뢰구축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 등을

협의의 주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신뢰구축조치는 단기로 추진하는 제1바스켓과 중·장기로 추진할 제2바스켓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바스켓에는 다자간 군수 및 군법분야 등 교류협력, ARF 컴퓨터망 구축, 국방언어학교 회의, 전쟁법 세미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2바스켓에는 ARF와 여타지역 안보 포럼들과의 연락체계 유지, 재래식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방위산업의 민수전환, 군사분야 환경보호 등이 추진사항으로 합의되어 있다. 또한 ARF는 다음과 같이 국제차원에서 논의·추진되고 있는 군비통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46]

①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등을 금지하고 폐기하는 대인지뢰금지에 관한 오타와조약의 성립을 환영하고, 지뢰제거·불발탄 처리·피해자 보상 등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을 강조하였다.

② 동남아 비핵지대화조약 등 비핵지대 설정을 지지하고, 핵강대국들과 의정서 체결 노력을 환영하였다.

③ 화학무기금지협정, 생물무기금지협정의 이행 및 검증의 진전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면핵실험금지조약 서명과 비준국 증가를 환영하면서 핵무기 제조 목적의 물질생산 금지조약에 관한 군축회의 협상을 조기 개최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 남아시아 핵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핵실험의 완전중지와 CTBT/NPT에 즉각 가입을 촉구하였다.

ARF 이외에도 남북한 공히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46) *The Statement of the Chairman of the Fifth ASEAN Regional Forum,* pp. 1~11, Manila, 28 July 1998. 이원우,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3(1998. 8), p. 182에서 재인용.

Asia-Pacific Region) 와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 민간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47] 특히 1993년 6월에 발족하고 현재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CSCAP내에는 「해양안보협력 작업반」(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orking Group), 「포괄적·협력적 안보 작업반」(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Security Working Group), 「신뢰·안보구축조치 작업반」(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Working Group) 및 「북태평양 작업반」(North Pacific Working Group), 그리고 「국제범죄 연구반」(Study Group on Transnational Crime) 등 4개의 작업반과 1개의 연구반이 구성되어 포괄적인 안보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작업·연구반은 각각 연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회의의 결과를 발간·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93년 10월에 발족하고 현재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참여하고 있는 NEACD의 주요의제는 참가국의 안보인식, 신뢰구축방안과 안보조치, 국방정보공유 등이며, 국가별 국방정책문서(국방백서) 소개, 안보상황 인식과 평화 및 의견교환이 주류이다. 특히 최근 미국은 NEACD를 정부차원의 기구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NEACD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은 1994년 5월 「ARF 고위관리회의」(ARF-SOM: ARF-Senior Officer Meeting)에서 정부간 대화체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의 설립을 제의한 바 있다.

---

47) CSCAP과 NEACD는 「半민·半정부」의 기구로 볼 수도 있다. 이는 CSCAP은 각국의 회원이 전·현직관료 및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NEACD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견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직관료, 군인 및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임.

(2) 특징

이상에서 살펴 본 탈냉전시대의 국제 및 지역차원의 군비통제 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자간 군비통제협상이 강화되고 있다. 냉전기간 중 미국과 구소련간의 「전략무기 제한협상」(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INF: Intermediate Nuclear Forces) 협상 또는 동·서 진영간의 MBFR 및 CFE협상 등과는 달리 탈냉전시대의 국제군비통제 활동은 다자간 협상의 형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CWC의 체결, NPT의 무기한 연장 합의, CCW의 제2부속의정서(지뢰)의 개정안 타결, CTBT의 채택 등은 다자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들이다.

둘째, 다자간 군비통제협상의 강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군비통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CWC, CTBT, FMCT 등과 함께 CCW, 「유엔재래식 무기이전 등록제도」, '국제 무기이전', '재래식 무기 불법이전 및 사용', '소형무기', '과학·기술 발달 및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재래식 무기통제와 관련된 조치들은 유엔 및 제네바 군축회의를 중심으로 타결되었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냉전시대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군비통제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3년의 「부분 핵실험 금지조약(PTBT: Partial Test Ban Treaty), 1967년의 「외기권 조약」(Outer Space Treaty), 1968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1년의 「대륙붕조약」(Seabed Treaty), 1972년의 「생물무기 금지조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7년의 「환경무기금지조약」

(Enmod Convention) 등은 「제네바 군축회의」(Geneva CD: Geneva Conference on Disarmament)를 통해 체결된 주요 군비통제관련 협약들이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국제기구들은 보다 중요하고 광범위한 군비통제 사안들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예컨대 단순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냉전시대의 非확산(non-proliferation)의 수준을 넘어 확산의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對확산(counter-proliferation)이 강조되고 있다.[48]

셋째, 군비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냉전시대의 군비통제는 주로 전략 핵무기와 유럽지역에서의 재래식 무기 감축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는 핵무기는 물론 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미사일 등 전반적인 대량살상무기가 군비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하여서도 CCW의 개정,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채택, 「바세나르체제」설립, 국제 무기이전과 재래식 무기 불법이전 및 사용에 대한 규제 및 통제조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군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탈냉전시대의 군비통제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유엔재래식 무기이전 등록제도」는 이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즉 「유엔재래식 무기이전 등록제도」는 회원국들이 주요한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와 기타 관련된 배경 정보를 유엔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 군사장비와 국내에서 생산된 장비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넷째, 검증방안 및 이행보장방안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WC에 검증의정서를 첨부하려는 노력, IAEA의 추가의정서('93+2

48) 최강, "국제 군비통제 방향 및 대응방향," p. 88.

계획) 채택, CWC 이행의 검증과 사찰기능을 담당하는 OPCW의 설립, CCW에 검증방안 및 절차 추가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다섯째, 냉전시대의 미·소 초강대국과 유럽 중심 군비통제와는 달리,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는 국제차원과 병행하여 지역차원에서도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아·태지역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역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체제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지역에는 국가간의 영토분쟁을 비롯하여 인종, 종교, 자원,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ARF, CSCAP 및 NEACD를 중심으로 신뢰·안보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지역차원에서의 군비통제 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 정부차원의 안보대화 기구의 설립이 강구되고 있다.

나. 한반도 차원

(1) 한반도 군비통제 현황

한 통계에 의하면 1980년대 말까지 남북한이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와 관련(평화정착과 통일제안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한 제의·제안들은 300여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9] 그러나 남북한간 본격적으로 군비통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9월 양측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 개최된 이후부터이다. 즉 고위급회

49) 송대성,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 및 제약성," 「국제정치논총」, 제 29집 1호(1989), p. 91. 남북한이 제안·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화연구원, 「북한 군사문제 제의 자료집(1948-1988)」(서울: 평화연구원, 1989) 및 통일원, 「남·북한 군축제의 관련 자료집」 (서울: 남북대화사무국, 1994)을 참조 바람.

담에서 남북한 양측은 각각의 신뢰구축·군비통제 방안을 처음으로 교환하고 협의하였다. 따라서 1990년을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의 원년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를 그리고 1992년 1월 20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3월 18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각각 1992년 5월 7일과 1992년 9월 17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서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 관련 조항(제9조～제14조)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 ㅇ무력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우발적 무력충돌 및 확대 방지
- ㅇ군사직통전화 설치
- ㅇ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 및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 및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 협의·추진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 대두와 한국 정부의 1993년도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결정으로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중단됨에 따라 1992년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됨으로써 남북한간의 군비통제협상 역시

중단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하여서는 남북한간에 이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기본지침과 포괄적으로 표현된 방안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간의 군비통제협상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제거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선언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은 일련의 북·미고위급회담을 거쳐,[50] 1994년 10월 21일 「미·북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포괄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구도에 합의하였다. 즉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통한 대북 경수로 지원, 미국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51] 및 북·미관계 개선을 보상책으로 하는 한반도 핵통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6년 4월 16일 한·미 양국정상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공동으로 제의하였는 바, 이는 남북한이 직접 군사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50) 미국과 북한은 1993년 제32차(5월 5일) 및 제33차(5월 10일) 북경 참사관접촉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북·미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음. 그리고 유엔은 1993년 5월 11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825호 4항에서 모든 회원국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는 바, 이것이 북·미직접협상의 명분을 제공하였음. 이후 북한과 미국은 1차 고위급회담(1993년 6월), 2차 고위급회담(1993년 7월), 3차 고위급회담(1994년 8월)을 개최하였음. 민족통일연구원,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과 발전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4), pp. 45~54.

51) NSA는 NPT 비회원국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 보유국이 회원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상징적 차원의 성격임.

운 상황이므로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회담개최가 보다 현실적·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7년 초부터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1997년 12월 제1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현재까지 6차례의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담(1998년 10월)에서는 「긴장완화분과위원회」와 「평화체제구축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제4차 회담(1999년 1월)에서는 2개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분과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각서」를 채택하고, 제5차 회담(1999년 4월)과 제6차 회담(1999년 8월)에서는 2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4자회담 의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4자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남북한간의 긴장 해소를 위해서는 군사적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주요 군사훈련 통보 및 참관, 군 인사 교류 등 기초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의제로 제의하였다.[52] 그러나 제6차 회담 이후 아직까지 본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있어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컨대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는 남북한간이 아니라 북·미간에 핵무기 및 미사일의 통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한 군비통제 제약요인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군비통제협상은 1992년 11월 이후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남북한간에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못

52)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 79.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군비통제는 상호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봉쇄정책에 따라 2000년 6월 13~15일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정부차원에서의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을 배제하는 자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뿌리깊은 상호불신 해소와 이에 따른 신뢰구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안보문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군비통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남북간 군비통제에 대해 상이한 목표인식과 접근방법이 남북한 군비통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비록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측은 군비통제의 목표와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남한은 군비통제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이에 따른 평화통일의 수단으로 간주, 「선평화, 후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군축을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선통일, 후평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통일기반으로서의 평화정착이 아니라 평화정착기반으로서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무기 및 병력의 감축, 즉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시행이후에나 실현될 수 있다는 「선신뢰구축, 후 군축」의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선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10만명으로의 군병력 감축을 주장, 「선군축」의 접근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간의 군사적 비대칭성이 남북한 군비통제의 진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남북한간에는 위협 대상에 대한 인식

상의 불균형이 존재한다.[53] 남북한 공히 상대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남한에게는 북한 자체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북한은 주한미군으로 대변되는 미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 위협의 대상에 대한 불균형은 양측이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군비통제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은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54] 북한은 대규모의 지상군 병력과 함께 우세한 포병화력 및 화생무기와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기술집약적 군구조를 지향하여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량살상무기는 부재한 전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통제대상 무기체계 및 전력 평가에 대한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진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남북한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심각한 입장 대립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1957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1차회의의 김일성 연설을 통해 남북한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한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특히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원칙 중 '자주'와 관련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자주는 곧 미군철수"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대남 공세를 강화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사견임을 전제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55] 그러나 북한은 4자회담 제1차 본회담(1997년 12월)

---

53) 이규열, "남북한 군비통제와 미국: 문제와 해결의 방향,"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4 (1998. 12), p. 119.

54) 황진환, "한국의 군비통제 연구: 정향과 과제," p. 177.

55) 예컨대:

· 1994년 초 재미한인 언론인 문명자씨 인터뷰시 김일성: "남북이 10만명 이

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4자회담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4자회담 제5차 본회담(1999년 4월)에서는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거론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99년 4월 8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에나 미·북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님.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 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임.

②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군대의 구조나 배치문제 논의가 가능함. 이때에는 남·북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함. 이는 4자회담에 임하는 한·미공동의 입장임.

③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같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대립은 각종 남북간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남북한 군비통제에 내재해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지 않는 한 남북한 군비통

하로 무력을 축소한 뒤 자체방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도 있다."

- 1996년 4월 미 조지아대학교 학술회의시 리종혁: "북·미양측이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 1996년 5월 미 시거센터 세미나시 리찬복: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

제의 추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섯째, 한국 정부의 군비통제정책상의 문제로서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 및 지역차원 군비통제와의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군비통제정책은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남북한 군비통제정책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바탕으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위기관리, 분쟁예방, 평화공존의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6] 한편 국제군비통제와 관련하여서는 탈냉전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 군비통제기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안보현실과 국가이익을 반영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평화지향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57] 그러나 남북한 군비통제는 기본적으로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면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 또는 최소한 지역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간의 연계를 결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군비통제정책은 남북한 군비통제의 진전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2. 동북아 안보환경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로 규정될 수 있는 현 동북아 질서는 아직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56)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p. 76~77.
57)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p. 92~97.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 분위기와 달리 아직까지 냉전적 요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대립구도'와 함께 경제협력 및 지역안정 유지 측면에서의 '협력구도'가 상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립구도는 냉전시대의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구조하의 대립구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구도로 볼 수 있는 바, 최근의 동북아 안보환경은 '대립속의 협력관계'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 대립관계

현재 미국은 동북아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미 및 미·일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미·일 대 중·러」의 대립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최근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미·일의 「전구미사일방어체제」(TMD: Theater Missile Defense) 공동연구 추진 등으로 미·일과 중·러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즉 중·러는 이와 같은 일련의 미·일간 안보협력 강화가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의 증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러는 1998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5개국 지도자회담과 12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시 미·일의 TMD체제 구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유엔에서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준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58] 특히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으로 대만해협 유사시 미·일의 개입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대만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지역 TMD구상에 포함되는 것을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지역의 영토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한편 러시아의 대중 무기 및 군사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군사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59] 중국은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1999년 3월 개최된 제9기 전국 인민대표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약 126억 달러의 1999년도 국방예산이 통과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2.7%가 증가된 것으로서 정부예산 증가율 7%를 감안할 때 약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이다. 중국의 군 현대화는 해·공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군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Kilo-636」 잠수함을 구입하고, 7,000톤급 구축함의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년 말에는 6,000톤급의 「루하이급」 미사일 구축함을 자체 건조하여 취역시켰다. 공군은 내몽골 지역에 현대화된 종합 항공무기 시범기지를 완성하였으며, J-10, J-12, JH-7 등의 신형 중국형 전투기를 시험하는 등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첨단 전자장비를 확보하고 러시아로부터 차세대 첨단무기 구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략무기와 관련하여서는 사정거리 8,000km의 ICBM인 「동풍-31」을 자체 개발하여 시험 발사하였다.

일본은 1976년 방위대강의 발표 이후 매 5년 단위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첨단무기 중심의 방위력 증강을 추진해오고

58)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17.

59) 다음은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p. 28~34를 주로 참조하였음.

있다. 해상자위대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에 따라 호위함을 비롯한 주요 함정을 건조하고, 5,400톤급의 새로운 잠수함도 진수하였으며, 항공자위대는 1999년 2월 조기경보기 3, 4호기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재정난으로 인한 국방비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 해군은 1998년 차세대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신형 핵추진 순양함인 「피터대제호」를 건조하였다. 전략무기에 있어서도 양적으로는 감축하고 있으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TOPOL-M」을 개발하여 1998년 12월 실전 배치하는 등 핵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협력관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미·일 대 중·러」 경쟁구도 조성 및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은 지역안정과 상호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미·중간에는 1987년이래 지속되어 온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협상이 타결(1999년 11월)되어 중국은 WTO 정식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1990년 이래 미·중간 갈등요인이 되어 온 미국의 대중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도 해결되었는 바, 이는 향후 미·중간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일간에는 「센카쿠 열도」 등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나, 경제협력 및 지역안정과 같은 공통적·호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다. 예컨대 양국은 1998년 쟝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일시의 합의에 따라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고, 1999년 12월 리루이환 중국정

치협상회의 상무위원장의 방일 등 지도부의 교환방문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을 모색하였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도서 문제를 위요한 갈등을 양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경제협력방안 구상 등의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무역·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일본은 러시아에 약속한 11억 달러 신용차관 공여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신용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도 역내 경제협력과 안정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사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NEACD에서는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방안과 안보상황의 인식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간 안보협의체 설립의 일환으로 NEACD를 정부차원의 기구로 승격시키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협의체(NEASED)의 설립도 제의·논의되고 있다.

3. 남북한 정상회담

분단 55년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50년이 되는 해에 최초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과 이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주변4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는 7월 23일 폐막된 'G8 정상회담'의 특별선언, 7월 27일의 '동남아국가연합 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 9월 7일의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10

월 20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 및 10월 31일 유엔총회의 '한반도 평화, 안보, 통일 결의안' 채택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유엔총회 결의안의 발의에는 148개국이 공동 참가했으며 총회에서 남북한의 제안설명과 싱가포르,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대표의 지지발언을 들은 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표명 중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견해로서 북한은 남한, 미국, 일본을 상대로 필요에 따라서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 한·미·일공조체제를 와해하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수용은 단지 전술적 차원의 정책조정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미·일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대북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남북정상회담이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및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60]

첫째,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상면·협의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남한의 역대 정부들이

60) 통일연구원,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제36차 국내학술회의(2000.5.30) 발표논문집」(서울: 통일연구원, 2000) 및 통일연구원,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제37회 국내학술회의(2000.6.27) 발표논문집」(서울: 통일연구원, 2000)의 논문 및 토론 참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금번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둘째, 남북한이 상대방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양측은 「6.15 공동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명기함으로써 상대방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의 최고책임자들이 만나서 장시간 동안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사실은 북한이 정상회담 이전까지의 소위 「통미봉남」정책을 포기하고 남한을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상회담이 남북한 당국의 직접 접촉에 의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된 1994년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당시 북·미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중재로 가능했던 것이다.

넷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양측 정상간의 합의 사항을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사실도 주목할만하다. 양측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합의·서명하고 실천을 약속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사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 직후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여러 번 다짐하고, 재미 언론인 문명자씨와의 인터뷰(6월 30일)에서도 약속은 지킨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상기와 같은 정상회담의 의미를 입증해 주고 있다. 예컨대 정상회담이 끝난 날부터 휴전선 일대에서는 물론 북한의 방송매체에서도 대남 비방방송이 전면 중단되었다.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는 문제는 「7.4남북공

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된 바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동선언 제3항의 이산가족 상봉은 합의대로 추진되어 이미 2차례의 상봉이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3차 상봉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또한 남쪽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조선국립교향악단과 KBS교향악단과의 협연, 100명의 남쪽 관광단의 백두산 등반, 시드니 올림픽 개회·폐회식 공동 입장 등의 이벤트성 행사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8월 14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및 경제협력실무회담 등 각종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가 합의·추진되고 있다.[61] 특히 남북한은 11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일괄 타결해 가서명하였다.[62] 이에 따라 그간 임의적이고 비제도적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이들 합의서의 발효시부터는 제3국을 통하지 않고도 남북간 환결제나 송금이 가능하고, 상대지역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상사분쟁과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된다.

---

61)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성장, "남북정상회담 후속대화의 평가," 한국정치학회 주최, 「2000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0. 12. 6.~8. 발표 논문을 참조 바람.

62) 이들 합의서의 발효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서명, 국회 비준, 비준서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가서명이 조약으로 발효되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양쪽 장관급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인데다 남북 모두 신속한 처리를 희망해 6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겨레」, 2000년 11월 13일.

나. 정상회담과 북·미 및 북·일관계

(1) 북·미관계

남북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하며, 이는 남북정상간 자주적 노력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락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라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가 「페리 프로세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미동맹체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63]

우선 미국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은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한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지원 또는 남한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획득하려는 전술적인 태도변화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리 프로세스」의 골격과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공조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감소 및 북한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실리를 추구하며 핵 및 미사일문제 등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을 등한시할 가능성과 남한

63) 다음의 논의는 박영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제문제」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2000년 10월), pp. 26~28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 협상지렛대가 약화될 가능성 등에 유의하고 있었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직후(6월 19일) 9개월 이상 끌어오던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한 것은 미·북 주도로 움직이던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이 남북주도로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64]

셋째,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동북아에서의 역내 패권국가 출현과 같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으면서도, 향후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 고조가 한·미동맹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 이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한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예컨대 케네스 베이컨 미국방부 대변인은 6월 16일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안정세력으로 남을 것," 리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은 6월 19일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간의 문제이며 양국이 필요로 하는 한 주둔할 것,"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6월 24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시기상조이며,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6월 28일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높은 관심 표명은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에 규정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64) 미국이 6월 19일 발표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1999년 9월 12일 북·미 베를린합의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에 대한 보상조치로 예정되어 있던 것임.

라는 표현의 함의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한 내에서 표출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의 3대 원칙 중 '자주'와 관련하여 70년대 중반부터 "자주는 곧 미군철수"라는 논리에 입각한 대남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핵문제 해결차원에서 추진된 한·미·일 3국 공조파기를 요구하는 논거로도 자주원칙을 거론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의 '자주'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적 토대 위에서 남북이 공존하면서 남북이 주인자격으로 힘을 합쳐 통일문제에 접근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남한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국은 최근 남한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내에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통일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국민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 즉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한·미동맹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5]

이와 같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시각, 특히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조명록 특사의 방미(10월 9일~12일),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방북(10월 23일~25일) 및 북·미 제6차 미사일회담 개최(11월 1일~3일, 콸라룸푸르) 등 일련의 북·미간 접촉으로 인해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어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조명록 특사의 방미시 발표된 북·미공동성명(10월 12일)은 제네바합의의 기본 틀을 준수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65) 「중앙일보」의 여론조사(8월 14일) 결과에 의하면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될 나라"는 중국(30.0%), 미국(26.5%), 일본(14.1%)의 순으로, 그리고 "통일을 가장 반대할 나라"는 일본(39.3%), 미국(28.1%), 중국(9.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사일문제와 테러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공식 천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기간 중에는 북한 미사일 및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함께 외교대표부 설치, 실종미군 신원확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6] 한편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합의에 의해 개최된 제6차 북·미 미사일회담에서 비록 합의문 발표는 없었으나 양측이 구체적이고도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발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 면에서는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표 1> 북미사일 북·미 절충 현황

의 제	북 한	미 국
장거리미사일 개발·시험발사 포기	인공위성 대리발사 요구	긍정적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포기	현금 등 경제적 보상 요구	현금보상 곤란/국제경제기구 등 통한 간접지원
배치된 중거리미사일 철수	자주권문제/협상대상 아님	동북아 위협하는 미사일 철수
인공위성 대리발사	북한 기술자 참여 요구	북한 기술자 참여 불가

출처: 「중앙일보」, 2000년 11월 4일

이러한 최근의 북·미관계 개선 조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미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현재 미국이 최우선적 대북정책 목표로

66) 통일부, 「북한동향」, 제510호(2000. 10. 21~10. 27), pp. 14~15.

추진하고 있는 북한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어야 마련될 수 있다. 이 경우 북·미관계의 급진전은 물론 3쌍의 양자관계, 즉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반도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와 나아가서는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2) 북·일관계

북·미관계의 경우와 달리 남북정상회담이 아직까지는 북·일관계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 8월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악화된 북·일관계는 1999년 12월 1일~3일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각 정당 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대화재개를 비롯하여 관계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북 기간 중 발표(12월 3일)된 북·일 공동발표에 의하면 양측은 정부간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담의 조기재개를 각자의 정부에 촉구할 것과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의 협력하에 양국적십자사가 협의·해결하도록 권고할 것에 합의하였다.[67]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는 대북 제재조치를 전면 해제(12월 14일)하였으며, 12월 19일~21일 베이징에서 북·일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동회담에서 양측은 ①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재개, ② 납치의혹관련, 행방불명자에 관한 철저한 조사, ③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등에 합의하였다. 12월 21일~22일에는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한 국장급 예비회담이 개최되고, 일본의 초당파

67) 오코노기 마사오, "북일교섭의 전개와 전망: 일본의 북한정책과 한미일협조,"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북·일관계와 동북아: 새로운 관계 모색과 전망」(2000년 11월 23일) 발표논문, p. 4.

대표단과 북한 노동당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국교 정상화교섭의 조기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일은 2000년 3월 7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4월 상순에 평양에서 개최할 것과 3월 중 적십자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일본정부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10만톤의 대북 쌀 지원을 결정하였다. 북·일 수교회담은 1992년의 제8차 회담 이후 처음으로 제9차 회담이 4월에 개최되었으며, 8월과 10월에 제10차 및 제11차 회담이 각각 개최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50만톤의 대북 쌀 추가지원을 결정(10월 5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북과 방북 직전에 발표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보(1999년 9월)와 「페리보고서」의 제출 및 발표(1999년 10월)가 북·일간 대화재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진전은 향후 북·일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미·일공조체제가 유지되는 상황하에서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은 북·일 양측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인 바, 제11차 북·일 수교회담의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북·일은 10월 30~3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차 수교회담에서 비록 합의사항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쟁점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현안해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11월 1일의 기자회견시 "이번 회담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68]

68) 통일부, 「북한동향」, 제511호, p. 14.

4. 종합평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추진여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성공적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따라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남북관계는 한반도 군비통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경제적 및 정치적 신뢰구축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으며, 북·미 및 북·일관계의 진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탈냉전시대의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의 군비통제 동향 및 동북아 안보환경, 즉 ① 다자간 군비통제협상의 강화, ②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군비통제 활동의 강화, ③ 군비통제 대상의 확대, ④ 검증방안 및 이행보장방안의 강화, ⑤ 아·태지역에서의 신뢰·안보구축 논의의 활성화 경향, 그리고 ⑥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등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여건과 역할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점들은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남북간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신뢰구축 미비
② 남북간 군비통제에 대한 상이한 목표인식과 접근방법
③ 남북간 군사적 비대칭성 존재
③ 남북간 주한미군에 대한 심각한 입장 대립
④ 한반도 군사문제 관련 북한의 대미 직접협상 입장
⑤ 동북아지역에서의 대립관계: 「미·일 대 중·러」 대립구도 및 중·일 중심의 군비증강 추세 등

따라서 한반도 군비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들은 제거 내지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Ⅴ.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여건 변화는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은 군비통제의 구체적·세부적인 이행방안 보다 상황적 여건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는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비통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안의 빈곤' 때문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빈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69] 다시 말해서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한 '제안의 확산현상'을 보일 정도로 국내외의 학자, 전문가, 민간단체들에 의해 이미 다양한 군비통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며(예컨대 <표 2> 참조), 남북간에는 합의된 군비통제 조치들(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초보적인 군비통제 조치마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한반도 군비통제관련 선행연구 및 군비통제 추진여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의 군비통제 실현 의지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69) 이서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포괄적 군비통제방안,"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4(1998. 12), p. 42.

<표 2> 민간 전문가들의 한반도 군비통제 제안현황

구 분	군 비 통 제 제 안 내 용
정치적 신뢰구축	· 상호 불가침조약 또는 선언 · 평화협정 체결 · 상호비난 중지 · 대화활성화 및 교류, 협력 확대 · 내정간섭 금지 · Hot-line의 다변화 · 남북한의 주변 4국이 참가하는 국제적 보장조치 · 전쟁방지를 위한 위기관리체제 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사력의 운용적 통제	· 정전협정의 충실한 준수 ·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가시화 ·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내지 평화지대화 · 정전회담의 남북 군사책임자간 회담으로의 성격 변화 ·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군사훈련 참관단 교환 · 군인사 상호교류 · 군사정보 교환 · 연간 군사활동 계획의 교환 · 일정규모 이상 군사훈련 사전 통보 · 군사훈련의 규모와 형태 제한 · 공세적 성격의 군사훈련 금지 · 군사훈련의 현지검증 의무화 · 연락장교 파견 · 병력 및 장비이동의 사전통보 · 일부지역에서 비무장지대 폭 확대 · 병력 및 장비(특히 공격용)의 후방배치 · 공세전력, 특히 해군과 공군활동 규제 · 동원 예비전력의 훈련 규제 · 남북한 병력배치 제한지대 설치 및 출입제한

구 분	군 비 통 제 제 안 내 용
군사력의 구조적 통제	· 군사력 증강 중지 · 북한의 잉여전력 감축을 통한 남북한 균형 달성 · 군사력의 균형적 축소 · 공격용 무기의 생산 및 반입 규제 · 대량확산 무기체계 생산 중지 · 주한미군의 철수와 북한군 동시 감축 · 주한미군 주둔상황하에서 남북한 동시 감축 · 남북한 동일수준으로 병력 감축
검 증	· 현장 검증 방식 · 현장 검증 장비 사용 · 공중정찰과 상주감시단 운용 · 불시검증의 허용 · 주변 4국에 의한 감시단 구성

출처: 한용섭, "한반도 군축의 진행경과와 앞으로의 과제," 유네스코 발표논문 (1998. 8. 31), p. 6, 이서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포괄적 군비통제 방안," pp. 31~32에서 재인용.

1. 정상회담의 모멘텀 유지·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의 진전과 이에 따른 한반도 군비통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북한의 정책변화를 단기적 차원의 전술적 변화로 보는 견해와 장기적 차원의 전략적 변화를 강조하는 견해가 대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

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과제는 남북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와 공존공영이라는 긴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간에 누적되어온 불신과 대결,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주변국들과의 복잡한 대외관계를 감안할 때 앞으로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남북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을 굳혀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 남북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과 함께 정치·군사분야의 긴장해소를 통해 상호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즉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이라는 3부문의 균형적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바,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를 하되, 남북관계 전반의 균형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현 단계의 남북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군사 이슈와 경제 이슈를 분리한 단계적 「기능주의적 접근방법」(functionalist approach), 즉 남북간의 지속적인 경협을 통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70] 남북한 신뢰구축에 있어서 경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군사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70) 예컨대 김성훈, "남북 경제협력과 상호주의," 한국은행 주최 토론회 발표 논문(2000. 11. 7).

경협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협의 지속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틀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교환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보장받지 않고 다른 방법, 즉 「군사 대 군사」의 방법을 택할 경우,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은 월등히 우세한 위치에 있는 경제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1994년 10월의 북·미간 제네바 합의는 이러한 접근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바, 동 협상의 타결은 미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활동 동결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71] 또한 현재 진행중인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도 궁극적으로는 북·미간 핵 협상과 유사한 형태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러한 큰 틀에 대한 서로간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북정상회담과 각종 당국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남북관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의한 제2차 정상회담 개최는 6.15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향후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의 연속성

71)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황진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한 군비통제정책: 포괄적·간접적 군비통제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6집 제3호(1997), pp. 473~500 참조 바람.

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각종·각급 회담들의 지속적·효율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실현하고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72]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72.2%)는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화해·협력의 시대가 마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지지(81.9%)하고, 북한을 적(4.6%)이 아닌 협력자 또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각각 49,8%, 44.0%)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많은 국민들(50.7%)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통일문제로 인해 남한 내에서는 「진보 대 보수」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통일정책을 위요한 이념적 갈등과 지역갈등의 일치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심화될 경우 통일담론(또는 북한담론)의 활성화가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갈등이 합리적인 통일담론의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순조로운 대북정책 추진, 대북협상력 제고 및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요청되고 있는 남북간 신뢰구축에 못지 않게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각급 남북회담에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실천가능성은 남한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

72) 「중앙일보」, 200년 8월 14일.

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한반도문제의 특성상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페리 보고서」의 이행, 즉 「페리 프로세스」는 3국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문제를 남북한이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미국과 남한, 북한의 '삼각관계'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3쌍의 양자관계, 즉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상호 교차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태적으로 전개되는 복합적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지나치게 앞서서 진전될 경우 한·미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한·미공조의 약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73]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삼각관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합의문건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

73) 한·미·북 '삼각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성한,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연구소 주최, 「한반도와 미국: 어제 오늘 내일」 학술회의(2000년 8월 19일) 발표논문을 참조 바람.

2.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 지양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상호 불신을 제거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상호 안보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실행이 용이한 사항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군사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유럽의 군비통제 접근방식은 합리적이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군비통제 정책과 남한의 많은 학자 및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한반도 군비통제 접근방식(예컨대 <표 3> 및 <표 4> 참조)은 북한의 급진적인 일괄타결 군축정책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의 실현은 상대방의 공식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비통제에 대해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상이한 접근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 방안 자체의 합리성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 위협인식상의 불균형, 전력의 상이성, 군사 전략적 및 군사력 운용의 상이성 등의 비대칭성도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 접근방식의 한반도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 단계의 군비통제조치 실행이 반드시 또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 군비통제조치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군비통제는 양측이 상쇄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비경쟁의 상태에 있을 때보다는 동종의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비경쟁의 상태에 있을 때 보다 용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4]

---

74) Emily Goldman, "Arms Control in the Information Age," in Nancy W. Gallagher, ed., *Arms Control: New Approaches to Theory and Policy* (Portland, OR.: Frank Cass, 1998), 황진환, "한국의 군비통제 연구: 정향과

<표 3> 남북한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남북관계	군비통제방안
1단계	○미북연락사무소 개설 ○대북제재추가해제 -북한외교관의 미국내 활동범위 확대 -금융거래, 무역확대, 미기업의 평양사무소 설치, 미기업의 대북 직접투자	○부분적 남북대화 재개 -남북경제협력 -종교·문화분야의 인적 교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통신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의 통보 -군인사교류 -군사훈련 참관 -정보교환 ○신뢰구축과 대북경협 및 차관제공 ○남북한의 독자적 검증
2단계	○미북간 정치·군사 협상 -미군유해송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 문제 -북한인권문제 -북미간 군사협상 통로 개설 문제 -평화체제전환 문제 -한반도 군비통제문제	○남북화해·협력단계 -남북한경협확대:임가공확대, 대북직접투자, 에너지개발, 관광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회·문화분야 협력 -남북간 인적교류확대 -통신·통상·통행협정 -평화체제전환	○운용적 군비통제 및 선별적 군축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배치제한지역 설정 -후방배치 장비 및 부대에 대한 감축 -주한미군배치조정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및 배치제한지역 설정의 비용 부담 ○공중정찰 협력과 현장 검증
3단계	○미북관계 진전 및 관계정상화 -미북기본조약 체결	○남북연합실현방안 구체화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대 -남북무역사무소 및 남북대표부 설치	○구조적 군비통제 -무기감축 -병력감축 ○군축비용지원 및 북한군수산업 민수화 지원 ○영공개방 확대와 상주감시단 운영

출처: 박종철,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p. 109.

과제," p. 177에서 재인용.

<표 4> 통일·군사문제 추진 구도

통일정책	군사협력	정 책 방 안
정상회담⇒교류협력	신뢰구축	-상호비방 중단 -고위급 군사회담 -군사적 상호 의사소통 -CBM 헌장 제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평화협정 체결
교류협력⇒ 남북연합체 발족	군비통제	-군비통제체제 가동 -군인사 상호교류 -군사훈련단 참관 초청 -군사훈련계획 상호 교환 -군사예산 공개 -무기체계 이전의 공개 -전략무기 개발 중단 -비무장지대내 병력 철수 -적대적 국내법 개정
남북연합⇒통일국가	군비축소	-공격용 무기제한 -군수시설 공개 -병력 및 무기체계 감축 -군사력의 후방 배치 -민간군사조직 해체 -주한미군의 성격 조정
	군사통합	-남북연합군 설치 -방어적 국방전략 수립 -상호방위조약 폐기 -핵전략체계 확립 -통일국가 국방정책 수립

출처: 이민룡,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협력의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소 주최,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 학술회의(2000. 12. 12.) 발표 논문, pp. 9~10.

이와 함께 현재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바탕으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위기관리, 분쟁예방, 평화공존의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군비통제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군비통제는 기본적으로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면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 또는 지역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한반도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국제군비통제 기제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탈냉전 시대의 군비통제동향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는 물론 재래식 무기의 통제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통제 대상의 확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군비통제 활동의 강화, 검증방안 및 이행보장방안 강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국제군비통제 영역의 확대와 통제조치의 강화를 의미한다.

둘째, 국제차원과 병행하여 아·태지역에서도 ARF, CSCAP 및 NEACD를 중심으로 신뢰·안보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에서 군비통제가 추진될 수 있는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셋째,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생·화학무기 등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부각되었다.

넷째, 최근 전방위 외교차원에서 다각도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은 이탈리아와의 수교(2000년 1월 4일)에 이어 호주(5월 8일), 필리핀(7월 12일)과 국교를 재개 또는 수립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수교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방국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12월 12일 북한과 영국간의 수교 합의 발표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7월 27일 북한이 아·태지역의 정부간 공식 협력체인 ARF에 가입한 사실은 향후 북한이 국제 및 지역 군비통제 기구에 참여하여 가입국에 부과된 의무조항을 준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한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남북한간 협상에만 의존하는 단선적인 단계적·기능적 군비통제정책을 지양하는 한편, 군비통제의 분야별 또는 주요 이슈별로 대화와 협상의 장을 선정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75] 예컨대 대략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추진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이 이들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간의 협상보다는 국제군비통제의 기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의 통제를 구분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핵 및 미사일의 통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협상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생·화학무기의 통제는 최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BWC와 CWC에서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76] 한편 군사적 신뢰구축문

75) 이러한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유재익은 군비통제와 군축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군비통제회담과 군축회담을 동시에 별도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유재익, "군비통제와 한국 안보의 미래,"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3(1998. 8), pp. 9~53.

76) 현재 북한은 BWC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CWC에는 미가입 상태인 바, 북한의 CWC가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여야 함. 한반도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이철기,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 각종 국제레짐과의 연결 및 활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2000 제Ⅶ권 제2호, pp. 6~48 및 최강, "국제 군비통제 방향 및 대응방향,"을 참조 바람.

제는 남북한 차원, 4자회담 차원, 지역차원의 3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RF, CSCAP, NEACD 공히 신뢰구축조치를 주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북한이 ARF 및 CSCAP에 가입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협의를 통한 신뢰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의 통제는 남북한·미국 3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77] 이 경우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를 엄격히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의제선택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한반도 군비통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계적·기능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각 단계의 방안이 다음 단계방안의 합의와 실행을 정당화시키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남북한·미국 3자협상' 추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대립은 각종 남북간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한반도 군비통제에 내재해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군사체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남북간 군사적 비대칭성, 즉 위협인식상의 불균형, 전력의 상이성, 군사전략적 및 군사력 운용의 상이성 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지 않는 한 한반도 군비

77) 남북한·미국 3자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남북한·미국 3자협상 추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임.

통제의 추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 북한 고위관리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다소 유연한 발언[78] 및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위원장의 주한미군과 관련된 발언[79]을 근거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적 토대 위에서 남북이 공존하면서 남북이 주인자격으로 힘을 합쳐 통일문제에 접근해 나간다는 해석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군비통제 논의 또는 협상시 주한미군문제를 반드시 다시 제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무기통제는 '남북한·미국 3자 협상'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3자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첫째,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에나 미·북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북한은 「주 북·미대화, 종 남북대화」전략에 입각하여 북·미간 협상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에 3자 협상은 실질적으로 북·미간 협상의 형태를 띠게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셋째, 3자협상은 그럴듯한 명분을 지니고 있으나 3자간의 입장 및 관심사항의 차이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80] 이러한 주장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3자협상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

---

78) 각주 55) 참조.

79) 2000년 6월 30일 문명자씨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위원장은 "미군이 나가란다고 나가겠는가?…· 미국은 분단에 책임이 있으니 통일에도 협조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으며, 또한 남한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자리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은 북한 내부용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80) 박종철,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pp. 48~49.

북정상회담 이후 동시에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는 남북한과 미국이 동일한 지위에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3자협상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 양국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 안보협력의 발전 방향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청사진과 로드맵(road-map)을 마련(<표 5> 참조)하고, 이를 동일한 협상테이블에서 북한과 협상할 경우 이는 북한의 이해와 이에 따른 상호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무기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표 5> 한미 안보협력의 발전 구도

남북한 관계	평화공존구도	통일구도
안보협력형태	한반도/지역안보동맹	지역안보동맹
전략개념	통일 촉진/보장 및 부분적 지역안보역할 수행	한반도 안보지원 및 지역안보역할 병행수행
지휘관계	독자 지휘체제, 유사시 대비 연합작전체제 운영	독자적 지휘체제하, 전략협조기구 운영
방위역할	한반도 방위 한국 주도, 미국 지원	지역안보 역할 분담 및 미국의 한국안보 지원
주한미군	해·공군 핵심 전력 위주 재편성	아·태지역내 미국 전력의 일부로 주둔
방위분담	비용분담 감소, 책임 및 역할 분담 증대	지역안보협력차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

출처: 권태영, 정춘일 공저, 「선진국방의 지평: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 (서울: 을지서적, 1998), p. 430, 김창수, "한미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동아일보 부설 21세기평화연구소 주최, 「한반도와 미국: 어제 오늘 내일」 학술회의(2000년 8월 19일) 발표논문, p. 11에서 일부 재인용.

또한 남북한·미국 3자협상은 북·미간 직접 군사협상이 핵 및 미사일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사문제 전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북·미관계가 진전되어 북·미간 관계정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으로부터 한반도 전체에 대한 관리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는 이제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81]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군비통제문제는 북·미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남북협상과는 별도로 북·미 군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미간의 직접 군사협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남북한·미국 3자협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미국 3자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미주의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확산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 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민간인 학살문제, 매향리 미군부대 폭격훈련 시비,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들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통일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며, 한반도 군비통제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심화될 경우, 이는 북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명분과 협상력을 제공하게 되어 결국 3자협상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비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요컨대 남북한·미국 3자협상은 남북한이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이해

81) 이규열, "남북한 군비통제와 미국: 문제와 해결의 방향," p. 48.

를 같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한반도 군비통제는 물론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방어적 방위' 개념의 도입[82]

'군사적 우위에 의한 절대안보'의 추구는 쌍방이 공격용 무기로 군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여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분쟁 발발시 확전의 가능성을 높여 군사적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방어적 방위는 군구조를 방어적으로 변경시켜 평시의 군사안정과 위기안정에 기여하게 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켜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군비통제는 방어적 방위에 입각한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이 전제될 때 사실상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방위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이 이를 합의·수용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상대방의 상응하는 조치 없이 방어적 방위 개념을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군축을 실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비통제의 실현 역시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북한이 남북간 군비통제에 부정적 내지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군비통제협상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방어적 방위 개념의 도입을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

82) 방어적 방위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전성훈, "'방어적 충분성'(NOD) 이론과 한반도 안보전략,"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권 2호, 1995, pp. 31~52; 유재갑, "'방어적 방위' 개념과 한국안보," 「전략연구」 1999 제VI권 제1호, pp.6~61; 박봉규, "통일시대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패러다임적 전환,"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남북 화해협력 시대 국가안보의 방향」, 국방·안보 학술회의 논문집(2000. 11. 18)을 참조 바람.

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언적 차원에서 방어적 방위의 개념에 입각한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안보정책의 기본방향과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을 북한에게 보다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간 방어적 방위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대화를 통해 동 개념에 대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남북한 양측은 방어적 방위 개념의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군비통제협상시 감축대상무기의 선정 및 특정 군사력에 대한 지리적 배치를 제한하는 '배치제한지역' 설정 등에 대한 합의 도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방어적 방위 개념이 'CFE-1'협상의 기조합의서에 반영되어 협상의 목적을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습공격 감행능력과 대규모 공격작전 감행능력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요컨대 한반도 군비통제의 효율적인 추진은 방어적 방위 개념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Ⅵ. 결 론

이상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한국의 군비통제정책 포함)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분류·검토하여 이들 연구의 장·단점들을 분석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 활발히 논의·추진되고 있는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의 군비통제 동향, 한반도 군비통제의 현황, 동북아 안보환경 및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여건을 분석·평가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방향을 극히 기본적인 수준에서 제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은 군비통제의 구체적·세부적인 이행방안 보다 상황적 여건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는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비통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안의 빈곤' 때문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빈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방향은 남북한의 군비통제 실현 의지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본방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구도 및 이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실상 '문제의 해결' 보다는 '문제의 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군비통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술적 수단일 뿐이라

는 Hedley Bull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남북간 인도주의적 교류 및 경제교류·협력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협력의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내부에서는 군사적 대치상황이 해소되고 남북간 평화공존이 거의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비통제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하여 군비통제의 최종단계인 군비축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현실은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적 대치상황의 완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비통제의 근본적인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보다 낮은 긴장의 수준에서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남북간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군비통제 조치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안정 유지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이는 군비통제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군비통제는 거시적인 대북정책의 맥락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바, 이는 군비통제가 다른 정치적·경제적 수단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추진·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군비통제협상은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임을 인식하고 성급하게 군비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군비통제의 접근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군비통제협상은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군비통제협상 그 자체가 군사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따른 위기안정과 군사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경남대 북한대학원 제2차 전문가 워크숍 보고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0.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서울: 법문사, 1990.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1999.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1, 1997. 7.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2, 1997. 12.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3, 1998. 8.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4, 1998. 12.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6, 1999. 12.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7, 2000. 6.

국토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1권 1호. 국토통일원, 1989 봄.

권태영·정춘일. 「선진국방의 지평: 21세기 국방발전의 비전과 방향」. 서울: 을지서적, 199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국방부, 1996.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과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4.

박영규·이교덕.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1999.

박영호·박종철.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박종철.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박홍규.「남북한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백영철 편.「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백종천·이민룡.「한반도 공동안보론」. 서울: 일신사, 1993.
세종연구소.「국가전략」 제1권 2호, 1995.
신상진·김국신·김영춘·여인곤.「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 유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신정현 외.「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진출판사, 1993.
신정현.「한반도의 군비통제」. 서울: 예진출판, 1990).
아태평화재단.「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오관치 외.「남북한 군비통제전략에 관한 연구(Ⅱ)」.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12.
외교안보연구원.「남북한군축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이철기.「동북아 군축론: 신동북아질서의 모색」. 서울: 호암출판사, 1993.
이호재 편.「한반도군축론」. 서울: 법문사, 1989.
_____.「한반도평화론」. 서울: 법문사, 1989.
전성훈.「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_____.「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중앙대학교 교책 민족통일연구소.「정상회담 후 남북관계의 변화: 중간평가」. 중앙대학교 교책 민족통일연구소 제9회 통일정책 세미나 발표 자료집, 2000.

차영구.「남북한군축협상 추진방안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통일연구원.「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제37회 국내학술회의(2000.6.27) 발표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0.

_____.「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제36차 국내학술회의(2000.5.30) 발표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0.

_____.「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38회 국내학술회의(2000. 8. 28) 발표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0.

_____.「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서울: 통일연구원, 1999.

통일원.「남·북한 군축제의 관련 자료집」. 서울: 남북대화사무국, 1994.

_____.「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평화연구원.「북한 군사문제 제의 자료집(1948-1988)」. 서울: 평화연구원, 1989.

하영선.「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청계연구소, 1991.

한국국방연구원,「군축환경 및 북한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1994

_____.「남북한 군비통제 모형개발Ⅱ」. 서울: 한국국방 연구원,1993

_____.「남북한 군비통제협상 적용모형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2.

한국전략문제연구소.「전략연구」, 1999 제Ⅵ권 제2호.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남북 화해협력 시대 국가안보의 방향」.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국방·안보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2000.

함택영 외.「남북한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해군대학.「해양전략(제108호)」. 해군대학, 2000.

황진환.「협력안보 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서울: 봉명, 1998.

Ben-Harin, Y. et.al. *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Europe: The Potential Role of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RAND R-3431-USDP), 1986.

Boserup, Anders and Robert Neild. eds. *The Foundations of Defensive Defens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90.

Bull, Hedley. *The Control of the Arms Rac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1.

Fisher, Cathleen S. and Jefferson B. Seabright. *Divided States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e German and Korean Experiences.* Washington, D.C.: The Henry L. Stimson Center, 1992.

Gallagher, Nancy W. ed. *Arms Control: New Approaches to Theory and Policy.* Portland, Oreg.: Frank Cass, 1998.

Han, Yong-Sup. *Designing and Evaluat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Measures: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Santa Monica, RAND, 1992.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0.

Kolodziej, Edward A. and Patrick M. Morgan, eds. *Security and Arms Control, Vol. 1: A Guide to National Policy Making.* 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Krause, K. and M. Williams. eds. *Critical Security Stud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Larsen, Jeffrey A. and Gregory J. Rattray, eds. *Arms Control: Toward the 21st Century.*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6.

Puchala, Donald J. *International Politics Today.* New York: Dodd and Mead, 1971.

Schelling, Thomas R. and Morton H. Halperin. *Strategy and Arms Control, 2nd ed.* Washington, D.C.: A Pergamon-Brassey, 1985.

The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Summit and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Structure*. The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2000.

Webber, Philip. *New Defense Strategies for the 1990s: From Confrontation to Coexistence.* London: Macmillan, 1990.

2. 논 문

김성한.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연구소 주최, 「한반도와 미국: 어제 오늘 내일」 학술회의(2000년 8월 19일) 발표논문.

김성훈. “남북 경제협력과 상호주의.” 한국은행 주최 토론회(2000. 11. 7) 발표논문.

남만권. “한반도 군비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국방연구원, 「군축환경 및 북한핵」.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4.

박 건. “탈냉전기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 대한정

치학회·육군 제3사관학교 주최,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국가안보 전략」 학술회의(2000. 10. 20) 발표 논문.

박봉규. “통일시대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패러다임적 전환.”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남북 화해협력 시대 국가안보의 방향」.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국방·안보 학술회의(2000. 11. 18) 발표 자료집.

박영규. “동·서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 군비축소의 문제.” 이호재 편. 「한반도군축론」. 서울: 법문사, 1989.

_____.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제문제」.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2000년 10월.

_____.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박홍규. “유럽의 신뢰성구축방안과 이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외교안보연구원 논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6.

백승주.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정상의 국방정책 조정 방향.”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남북 화해협력시대 국가안보의 방향」.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국방·안보 학술회의(2000. 11. 18) 발표 자료집

송대성. “한반도군축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 및 제약성.”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안병준. “남북한 군축의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한국 국제정치학회, 1989.

양성철, 조덕현. “남북한 군비통제 제안분석 및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1호. 한국정치학회, 1987.

오코노기 마사오. “북일교섭의 전개와 전망: 일본의 북한정책과 한미일협조.”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남북화해시

대의 북·일관계와 동북아: 새로운 관계 모색과 전망」(2000년 11월 23일) 발표논문.

유석렬. “남북한 군비통제의 배경, 특징, 전략.” 신정현 외.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진출판사, 1993.

유인택. “북한의 정치 군사회담의 배경.” 한국국방연구원. 「남북한 정치 군사회담과 대응책」, 국방학술토론회(1989. 5. 11) 발표 논문.

유재갑. “남북한 군비통제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한국정치학 회보」, 제29집 4호. 한국정치학회, 1995.

_____. “남북한 군비통제의 문제점과 가능성.” 「남북한 관계개선과 군비통제」, 한국발전연구원 학술심포지움(1990. 10. 25) 발표 논문.

유재익. “남북 군비통제의 과거·현재·미래.”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2, 1997. 12.

이규열. “남북한 군비통제와 미국: 문제와 해결의 방향.”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4, 1998. 12.

이달곤.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1권 1호. 국토통일원, 1989 봄.

이민룡.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협력의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소 주최,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 학술회의(2000. 12. 12) 발표 논문.

이원우.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3, 1998. 8.

이재헌. “국제 및 주변국의 군비통제 추이: 남북 군비통제 정책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 자료 21, 1997. 7.

이철기.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한국정치학회, 1995.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 각종 국제레짐과의 연결 및 활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2000 제Ⅶ권 제2호.

전성훈. “COCOM, Wassenaar 체제 그리고 한국의 안보.”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7, 2000. 6.

_____. “‘방어적 충분성’(NOD) 이론과 한반도 안보전략.”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권 2호.

정성장. “남북정상회담 후속대화의 평가.” 한국정치학회 주최, 「2000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000. 12. 6) 발표 논문.

정 진. “동북아 다자안보기구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남북 화해협력 시대 국가안보의 방향」.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국방·안보 학술회의(2000. 11. 18) 발표 자료집.

조충현. “한반도 군비통제 향방에 관한 제안.” 북한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1992. 6. 2) 발표 논문.

최 강. “국제 군비통제 방향 및 대응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략연구」, 1999 제Ⅵ권 제2호.

하영선,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군비통제방안.”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울: 통일원, 1990.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_____.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백영철 편.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황진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한 군비통제정책: 포괄적·간접적 군비통제정책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36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_____. “남북한 군비통제: 쟁점과 대책.” 대한정치학회·육군제3사관학교 주최,「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국가안보 전략」학술회의(2000. 10. 20) 발표 논문.

_____. “한국의 군비통제 연구: 정향과 과제.” 국방부.「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26, 1999. 12.

Almeida, Pedro and Michael O'Hanlon. "Impasse in Korea: A Conventional Arms-Accord Solution?." *Survival,* Vol. 41, No. 1, Spring 1999.

Borawski, John. "From Stockholm to Vienna: 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in Europe." *Arms Control Today,* May 1989.

Dalby, Simon. "Contesting an Essential Concept: Reading the Dilemma in Contemporary Security Discourse." K. Krause and M. Williams. eds. *Critical Security Stud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Darilek, Richard E. "The Futur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A Tale of Two Cities: Stockholm, Vienna." *Survival*, Jan/Feb. 1987.

Dean, Jonatha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How is the European Experience Applicabl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 no. 1 (Summer1991).

Goldman, Emily O. "Arms Control in the Information Age." Nancy W. Gallagher. ed. *Arms Control: New Approaches to*

Theory and Policy. Portland, Oreg.: Frank Cass, 1998.

Goodby, James E.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1 (Summer 1990).

Hunter, Robert E. "Lessons for Korea from Conventional Arms Control Talks in Europ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1 (Summer 1990).

IntriLigator, Michael D. and Dagobert L. Brito, "On Arms Control." Edward A. Kolodziej and Patrick M. Morgan. eds. *Security and Arms Control, Vol. 1: A Guide to National Policy Making.* 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Johnson, Rebecca. "The Arms Control Agenda at the UN: Braking New Ground or Braking Old Habits?." *Arms Control Today*, Vol. 26, No. 10 (January/February 1997).

O'Hanlon, Michael. "Stopping the North Korean Invasion: Why Defending South Korea Is Easier than the Pentagon Thin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4, Spring 1998.

Rotfeld, Adam. "Applicability of European arms control model to the Korean Peninsula."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1990.

Taylor, Trvor. "The Arms Control Process: The International Context." Jeffrey A. Larsen and Gregory J. Rattray. eds. *Arms Control: Toward 21st the Century.*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6.

3. 기 타

「중앙일보」
「한겨레」
통일부. 「북한동향」.
The Statement of the Chairman of the Fifth ASEAN Regional Forum. Manila, 28 July 1998.